



2025학년도

학교 안전 계획

2025. 3. 17.

시화나래중학교

[학생안전부]

■ 목 차 ■

제1장 학교현황	3
제2장 예방활동	20
제3장 대비활동	45
제4장 대응절차와 행동수칙	45
제5장 복구활동	55

1

학교현황

가 학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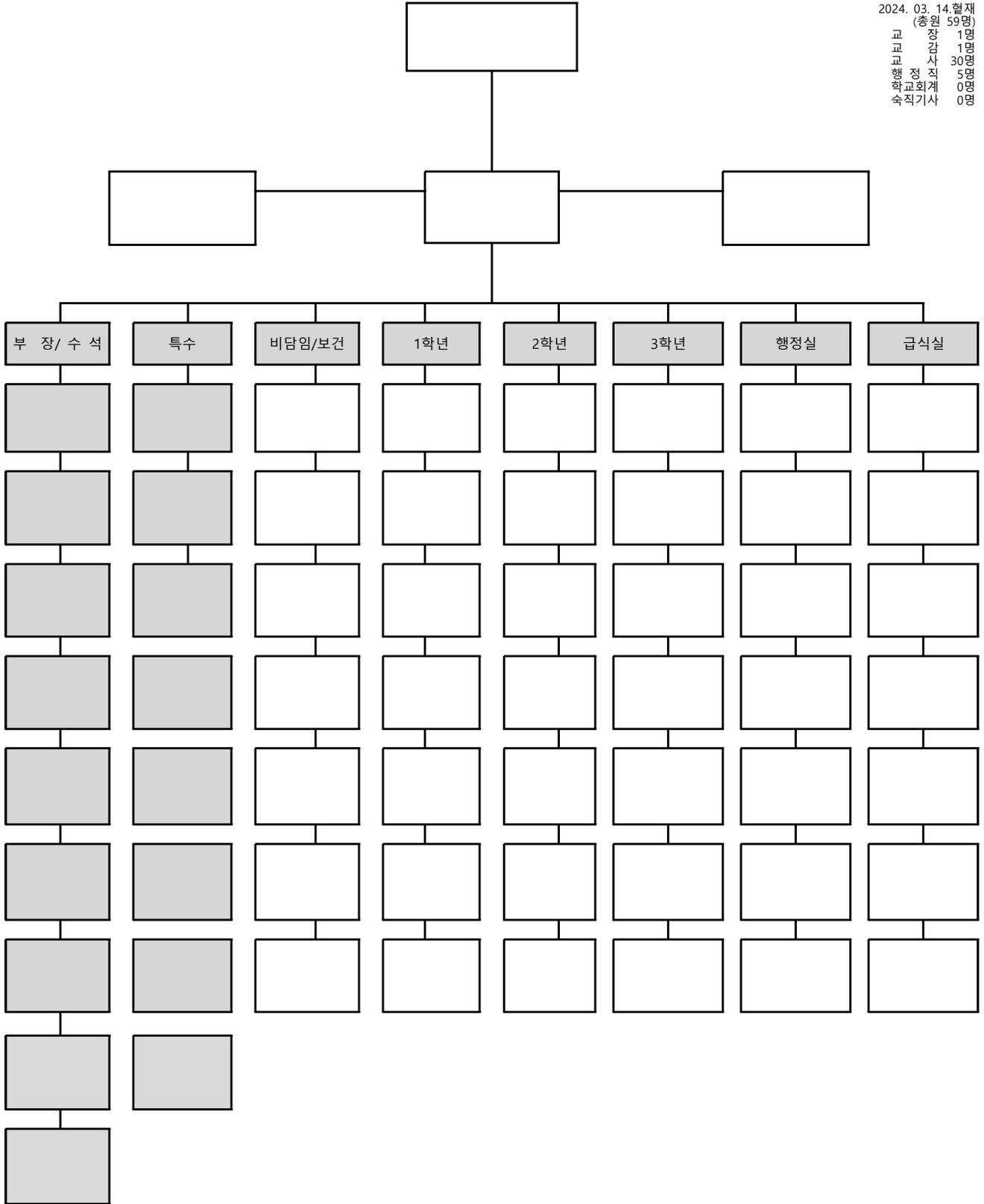
학교명	시화나래중학교	설립 구분	공립
주 소	우)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남로 70, 시화나래초중학교		
전 화			
교 장			

학교 현황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총		특수학급	비고
	학급수		4		3		2		9		4	
	학생수		94(4)		67(5)		52(7)		213(16)		16	
교직원 현황	교장	교감	교 사		행정직		교육 공무직원		총계		안전관련 자격증소지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1	9	21	-	1	-	3	-	25	-	-
시설 현황	학교평수		건평		교실수 (관리실포함)		실험실수		기숙사유무		체육실 유무	기타
	21,205.16㎡		6,989.35㎡		40		2		무		유	

나 교직원 명단과 연락처

직원 비상연락망

2024. 03. 14. 현재
(총원 59명)
교장 1명
교감 1명
교사 30명
행정직 5명
학교회계 0명
숙직기사 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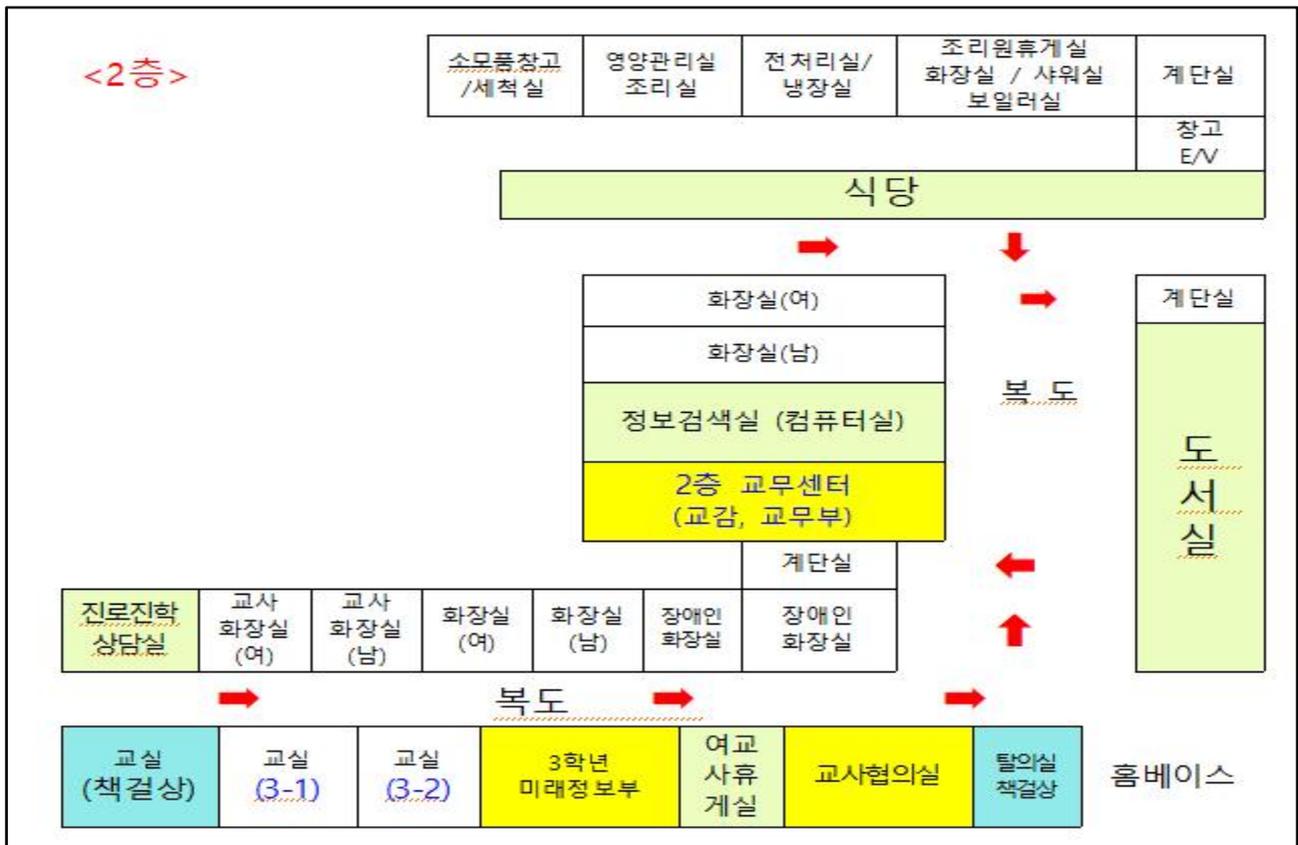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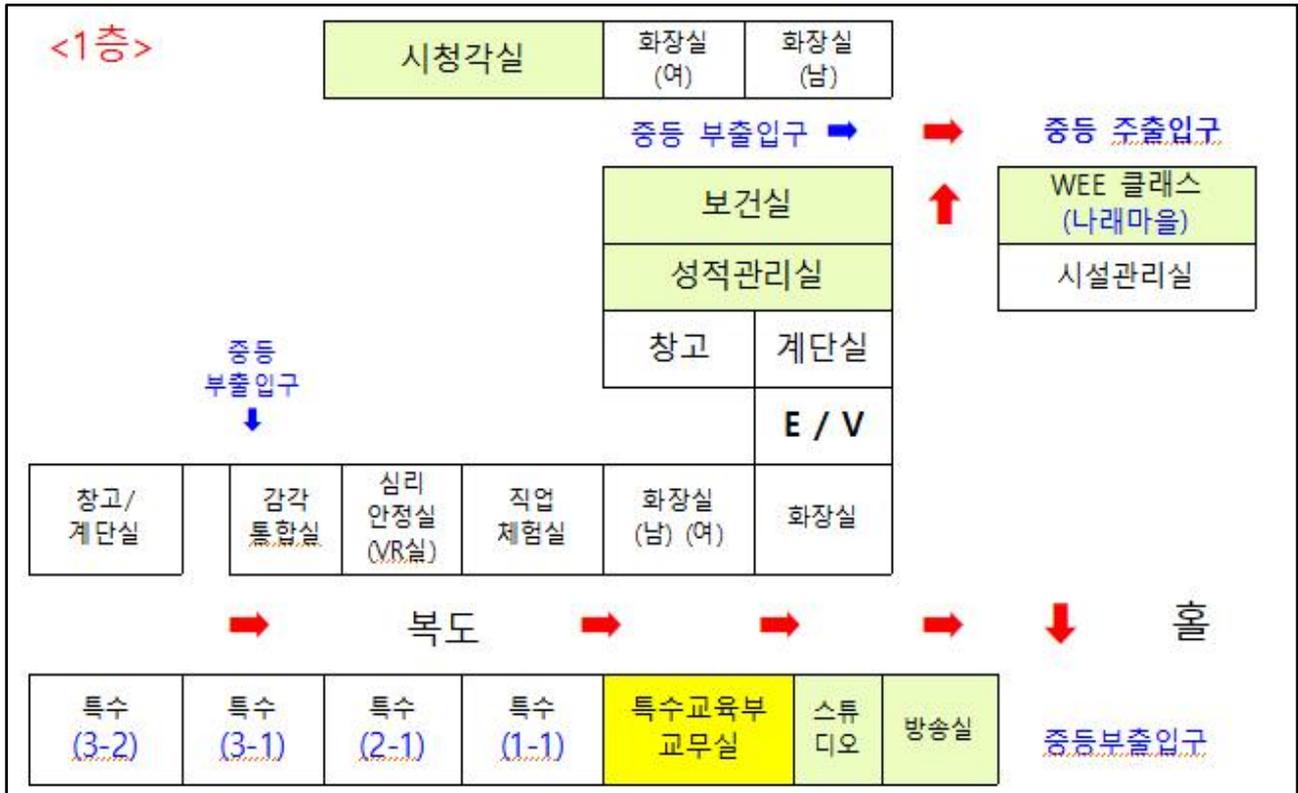
다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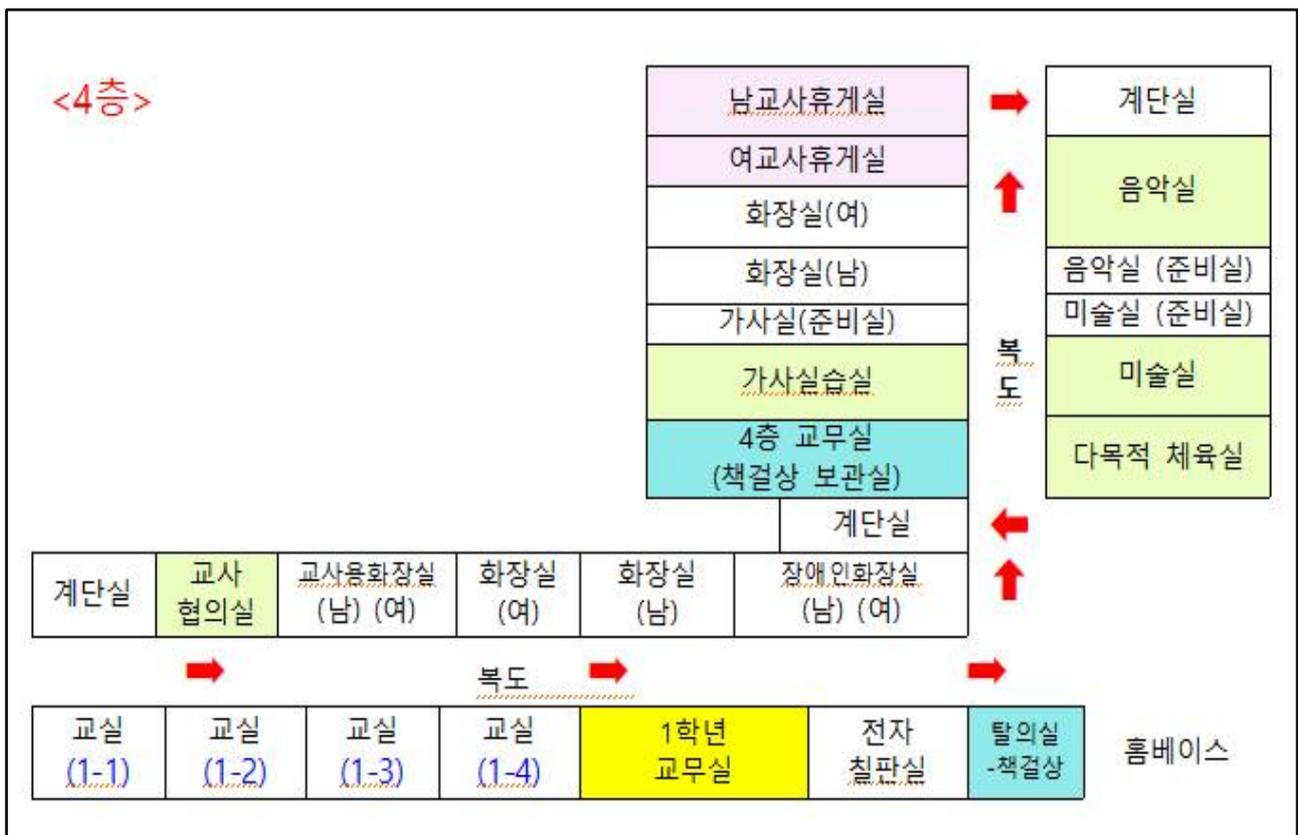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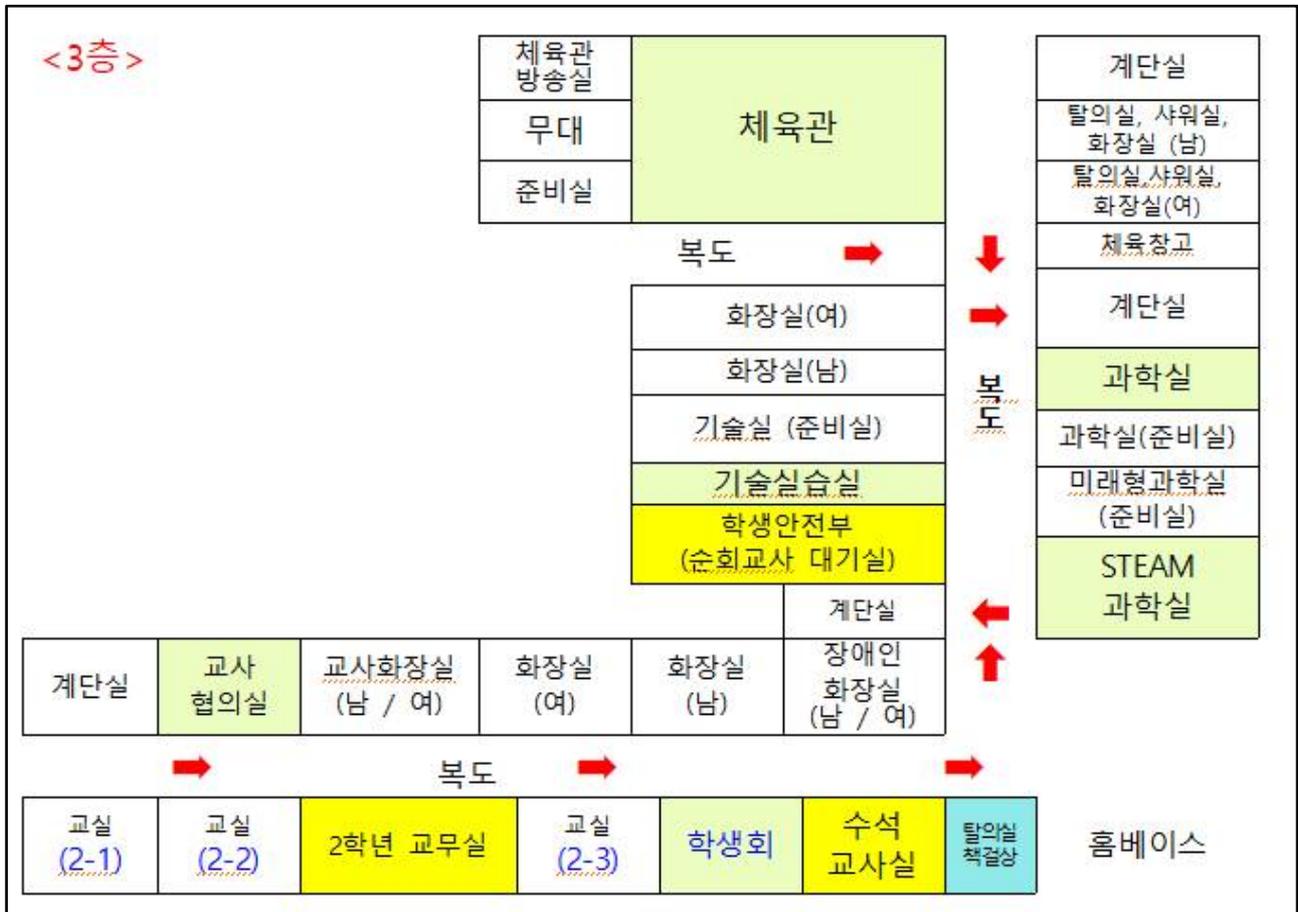


➡ 긴급, 일반차량 진출입로(일반출입구와 동일) ➡ 일반출입구

- ▶ 1층 출입구 5개 앞, 뒤를 이용하여 운동장으로 대피
- ▶ 출입구를 이용하여 운동장으로 대피
- ▶ 특수 상황이 아닌 이상 창문으로의 대피는 하지 않음.

비상 대피로





축구 골대	1-1, 1-2, 1-3, 1-4 / 2-1, 2-2, 2-3 / 3-1, 3-2	축구 골대	농구장
	조 회 대		

라 교육청 재난대응 체계 및 비상연락망

도교육청 및 지원청 주요 사안별 해당부서

사안명	전화번호	주관부서	비고 (협조 부서)
▪ 급식 식중독 사고		학 교 급 식 보 건 과	
▪ 감염병		체 육 건 강 과	
		유 아 교 육 과	유치원
▪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안전사고		지 역 교 육 협 력 과	
		유 아 교 육 과	유치원
▪ 체육활동 안전사고		체 육 건 강 과	
▪ 학교운동부 사고		체 육 건 강 과	
▪ 교육시설안전		학 교 안 전 과	시설과
▪ 교육시설 붕괴		학 교 안 전 과	시설과
▪ 미세먼지		학 교 급 식 보 건 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학 교 안 전 과	
▪ 과학실 실험·실습 사고		융 합 교 육 정 책 과	
▪ 특성화고·미이스터고 실험실습 사고		진 로 직 업 교 육 과	
▪ 직업계고 현장 실습 안전 사고		진 로 직 업 교 육 과	
▪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중 사고		융 합 교 육 정 책 과	

▪ 학교폭력		생활인성교육과	
▪ 학생 성희롱·성폭력		생활인성교육과	
▪ 교원에 의한 학교성폭력		생활인성교육과	
▪ 자살, 자살시도, 자해, 유괴·실종, 아동학대		생활인성교육과	
		유 아 교 육 과	유치원
▪ 특수학교 안전사고		특 수 교 육 과	
▪ 유치원 안전사고		유 아 교 육 과	
▪ 교통 및 통학 중 안전사고		학 교 안 전 과	
		특 수 교 육 과	특수학교
		유 아 교 육 과	유치원
▪ 외부인 무단 침입 학생 안전사고		학 교 안 전 과	그 외 외부인 무단 침입 안전사고 직종별 관련 부서
▪ 물놀이 안전사고		학 교 안 전 과	
▪ 자연재난, 화재, 방사능 누출, 승강기 사고		학 교 안 전 과	시설과
▪ 국지도발 및 테러		운 영 지 원 과	
▪ 지역연계교육 안전사고		지역교육협력과	
▪ 대학연계교육 안전사고		지역교육협력과	
▪ 학원 및 교습소 안전사고		평 생 교 육 과	
▪ 산업재해 예방 관리		학 교 안 전 과	
▪ 중대재해 예방 관리		학 교 안 전 과	
▪ 학교안전공제회		학 교 안 전 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교육시설공제		학 교 안 전 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교원배상책임보험		생활인성교육과	
▪ 당직실(야간 및 공휴일)		남부청사	
		북부청사	

● **체험학습, 학생폭력 사안 보고 체계**

● 초·중·고 → 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

※ 경기도 교육청 및 교육부 관련 부서에 동시에 보고

마 지역재난대응 및 응급구조기관 비상연락망

해당 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학교전담경찰관	여성청소년과	031-310-9140	
관할소방파출소	시흥119안전센터	031-310-0502	
관할지구대 및 파출소	옥구지구대	031-499-0112	경찰민원182
	정왕지구대	031-433-4112	

의료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시화병원	시흥시 정왕동 1860-1		대표번호 1811-7000
의료법인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	시흥시 공단1대로 237(정왕동)		
바른정형외과의원	시흥시 정왕동 1881-6		
세종내과의원	시흥시 정왕동 세종프라자 3층 304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516		

바 시설관리 및 물품공급업체 비상연락망

해당 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업체
전기 관련	행정실		(주)아진전기기술
냉난방 관련	행정실		삼성서비스센터
식자재 공급	급식실		스쿨푸드
보안업체	행정실		에스원
컴퓨터 관련	정보부		(주)피씨로
소방 관련	행정실		우리소방기술단

사 안전 관련 MOU 체결 현황

-해당 없음.

아 비상시 사고지휘체계 및 보고서식

학교 재난대응 및 구성원 임무



※ 반별 인원구성 및 임무는 학교의 규모와 여건에 맞게 재구성

○ 운영

- 자살·현장체험학습·학교 내 사고 등 학생사고 발생시 편성·운영
- 평시 상황발생 대비『사고대응 일이삼』슬로건 숙지
- 사고발생 시 상황전파시스템 활용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학교현장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



직 책		임 무	비고
최 초 발견자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육하원칙, 행정안전부 상황전파시스템 가동) - 사고현장 보존(사진 및 동영상, 가림막 설치 등)	
대책 반장	학교장	- 사고대책반 소집 및 회의주재 - 사안논의 및 사고처리안 결정 → 해결방안 지시 -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 통지 및 협조 요청 - 사안처리에 대한 보호자 불신해소 대책 강구	
대책 부반장	교감	- 학교장 부재 시 업무 대리 (현장사고 대책 총괄)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번호 및 기록자 2인 지정) - 반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보 종합 및 분석(언론 일원화 : 언론, 학부모, 시민단체 등) - 반별 사안 처리 진행상황 확인(체크리스트 검토) - 유관기관 협조 의뢰 -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대책부반장 및 반장)	
현장 대응반	학생안전부	- 현장대응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교감 부재 시 업무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 학년 피해 상황 종합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및 의견수렴 - 학년 관리(학생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대책 수립) -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집, 시간대별 상황 보고 - 최초 사안 조사 및 사안보고서 작성 - 피해상황 종합 - 피해학생 후송병원별 학생인원 파악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응반 일지 작성) - 사안관련 학생 정보제공(상담기록, 교우관계 등) - 보호자 연락 - 학급 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 응급조치 및 의료자문 -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처리(피해 학생 및 교직원 등 보상)	
교내 지원반	교무기획부	- 교내지원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학생 현황 파악 - 직원회의 개최, 비상연락(전직원, 학부모) - 피해학생 및 가족 지원 - 학사일정 검토 - 관련 문서 작성 - 상황실 전화응대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황판 및 체크리스트, 일지 작성)	
	상담교사 (wee클래스)	- 사안 관련 학급 및 현장목격자 등 상담 필요 학생 상담지원 (필요 시 외부지원 자문 및 지원 요청)	
행정 지원반	행정실	- 학생 귀교 대책(이동수단 확보)수립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물적 피해 현황 파악 -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 교육시설공제 업무 처리(재산 및 시설) - 행·재정 지원	
외부 지원	협력지원단체	- 전문 외부기관 고유 역할 진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회장	-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협조(유언비어 확산 방지) - 사안 관련 학부모 중재 - 학부모 봉사단 조직 및 운영	

사안대응 체크리스트

확 인 내 용	조치 시간	확인자	비고
<input type="checkbox"/> 사고 신고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			
<input type="checkbox"/> 사고현장 보존 및 구호조치 (2차사고 예방)			
<input type="checkbox"/> 상황보고 - 학교장 보고, - 상급기관 보고			
<input type="checkbox"/> 현장사고 수습본부 가동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설치 및 기록자 2인 지정) - 반 구성 및 역할 분배 - 반별 사안처리 및 진행상황 확인			
<input type="checkbox"/> 언론 대응 (본청 대변인실과 협조)			
<input type="checkbox"/> 현장대응반장 - 현장대응반 담당자별 세부 역할 지시 - 해당 학년 피해상황 종합 - 후송병원별 담당교사 배치			
<input type="checkbox"/> 피해학생 보호자 연락			
<input type="checkbox"/> 사고관련 정보 수집 - 최초신고자 진술 - 목격자 진술 - 사고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확보 - 기타 사고관련 자료			
<input type="checkbox"/> 사안보고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피해상황 확인 (시간대별) - 인적 피해; 사망 명, 부상(중·경상) 명, 실종 명 - 물적 피해;			
<input type="checkbox"/> 사안당사자 정보제공 및 반별 학생관리			
<input type="checkbox"/> 교내지원반장 - 학생 현황 파악 - 장례(조문) 계획 수립 - 학사일정 조정계획			
<input type="checkbox"/> 비상연락 - 전직원,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관련문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상담지원 - 요상담, 요보호학생 조치			
<input type="checkbox"/> 행정지원반장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학생 귀교 대책 계획			
<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자문기관) 협조 요청 (법률자문 및 지원)			

학생안전사고 사안보고서

- 수 신 :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과
- 보 고 자 : 소속) 직) 성명)
- 보고 일시 : 년 월 일, 00:00
- 기본 사항

학교명			
소재지		전화번호	
주요내용		발생일시	2025.○○.○○. 00:00 ~ 00:00
사고	· 피해자: ○○○ (학년 반, 남/여) · 피해현황 : 사망·부상·중상/경상 ○명 등		

■ 세부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경위 -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술 ◦ 언론 보도 내용(해당없는 경우 미기재) ◦ 경찰 조사 내용(해당없는 경우 미기재)

■ 사안 발생 후 학교 조치사항

- 가.
- 나.

■ 교육지원청의 조치 및 지원 내용

- 가.

■ 기타

자 비상경보발령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구분	주 수단	보조수단	정전시 수단	비고
접수(외부)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유선	확성기 호루라기	
전파(내부)	학교 내 방송	확성기 호루라기	확성기 호루라기	방송실, 교무실

자 비상시 교직원 일반 책무

1) 학교장

- 학교장은 직접 사고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책임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
- 학교장은 항상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갖지만, 재난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 수준의 활동, 외부의 협력기관이나 학부모와의 접촉 등에 집중할 수 있음
- 학교장은 교육청 재난 담당자와 학교의 사고지휘관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

2) 사고지휘관 (교감/행정실장, 학교안전책임관)

- 사고지휘관의 책임

- 본 재난대응계획에 기술된 행동과 절차에 기초하여 재난의 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반적으로 지휘
- 학생, 교직원,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지시
- 재난대응 행동수칙(기능부속서와 재난유형별 상세부속서 참조)의 실행에 관한 의사결정
- 응급의료로 인해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을 긴급하게 후송하는 수단을 마련
-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과 협력
(재난의 유형에 따라 소방관, 경찰관, 응급구조대원과 같은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이 사고현장에 대한 지휘권한을 갖는다)
- 학교장과 교육청의 관리자들에게 재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3) 교사

- 교사는 학생지도에 관한 책임을 지며, 별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학생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이들과 함께 행동

-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
- 재난대응 프로토콜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 서면, 교내방송, 인터콤, 개인휴대전화, 신호 등을 통해 전달받은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프로토콜에 따라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을 건물 바깥이나 건물 내부 집합 장소로의 이동 지도
-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적 절한 행동을 실행 지시

- 학생들을 건물 외부나 내부의 집합장소 또는 학교 밖의 지정된 대피지역의 학생의 인원 확인
- 실종된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고지휘관에게 즉시 보고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에 의해 지시사항을 실행
- 부상학생이 보건교사나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에게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필요 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본교의 교직원들은 기본소생술과 응급처치에 관한 공인자격의 취득을 위한 훈련에 참여

4) 보조교사: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한 책임

5) 보건교사

-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 사항 포함
-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실행
-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들에 의한 응급처치의 실행을 감독
- 응급처치와 학교응급의료체계를 구축

6) 기능직원(건물관리 용역업체 직원 포함)/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
- 건물, 시설, 기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사고지휘관 또는 관련자에게 보고
- 가스, 수도, 전기의 메인 밸브를 통제함으로써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건물, 시설물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
- 재난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물품의 관리, 사용, 보급을 지원
- 사고지휘관이 학교 건물과 시설의 피해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력

7) 사무직원

-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 사항 포함
-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대응 관련자들과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는 역할을 수행
- 학교의 중요한 기록물과 문서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 사고지휘관이나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들에 의한 지시사항을 실행
- 학교장과 재난관련 정책결정권자들을 지원
-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재난 발생 시, 미디어를 통한 재난방송을 청취
- 필요 시, 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수행

8) 급식/식당 서비스 담당자

-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
-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여 제공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실행

9) 강사 등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의 요청에 따른 보고와 지시사항을 실행

10) 학생

-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여 아래의 행동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지정된 학생들은 이를 실행
- 재난대응훈련은 물론이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는 동안 자신들이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
- 재난 대응 시 자신과 타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
- 재난 발생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방관자로 행동하지 않고 이를 알려야 하는 것 의 중요성 이해
- 자연적, 기술적, 인적 유해위험요인들과 이와 관련된 예방, 경감, 대비 조치들에 대한 인지역량을 개발
- 학교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 복구 활동에 적극참여

11) 학부모/보호자

- 학교안전, 폭력예방, 재난 대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
- 재난에 대한 학교의 대비역량 강화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
- 재난과 관련하여 학교로부터 요청 받은 정보를 학교에 제공
- 학교에서 교육 또는 훈련 받은 재난대응행동을 가정에서도 연습
- 학교가 재난을 직면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해야 할 역할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해

카 심폐소생술, 응급구조 등 교직원의 안전연수(3년간 15시간) 현황

1) 안전연수(7대 영역, 15시간 이상) 현황

연도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 /A)×100
2024.3. ~ 2025.2	2024	27	4	31	27	4	31	100

2) 심폐소생술 연수 현황

교육대상 인원수(명)				교육실시 인원 수(명)				실사비율%	
학생 (A)	교직원 수			학생 (C)	교직원 수			학생 (C/A)	교직원 (D/B)
	교원	직원	소계 (B)		교원	직원	소계 (D)		
152	27	4	31	152	27	4	31	100	100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운영 계획

- 사업기간 : 2025.03 ~ 2026.02
- 운영목적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보호
- 운영시간 : 월-금 (1학기) 08:00~13:00, (2학기) 08:00~12:00
- 역 할 : 외부인 출입통제, 교내 취약지역 순찰 및 CCTV 확인

『사고대응 일일삼』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의 줄임말

- ※ 사고발생시 학생, 교직원등은 가장 먼저
 [119에 신고 ⇒ 사고자 구조 ⇒ 선생님, 혹은 관리자 보고]를 함으로써
 생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슬로건

2 예방 활동

가 학교 및 건물 출입지점 안전 관리 방침과 절차

■ 학교 및 건물 출입지점 안전관리 방침

	안전관리 요원	정문 및 후문	시간	역할
주간 (07:00-18:00)	학생안전부, 행정실 및 학생보호인력	교사, 학생보호인력 (배움터지킴이)	08:30-09:00 09:00-12:00 14:00-17:00	교통안전지도 외부인 출입통제
야간 (18:00-07:00)	당직 기사	폐쇄	18:00-07:00	외부인출입통제 및 시설관리

나 방문객의 학교출입 방침과 절차

- 학교 출입 방문객은 행정실을 거쳐 신분확인 및 방문증을 패용
- 행정실에서 교무실 안내 또는 담당교사 호출

다 물품(택배, 식음료 및 자재)수령 방침과 절차

출입대상	주차	절차
식자재 운반 차량	정문	영양교사 사전 확인
학부모 차량	정문	해당 담당교사 및 행정실 확인
업무차량(택배)	정문 입구(외)	해당 물건 행정실에 납품

라 통학안전 지도 및 관리 현황(스쿨버스, 차량 및 보행등 교생 등)

교통안전지도	해당학년	담당교사	활동시간
정문	전학년	전교사	08:25-08:55

- 정문을 중심으로 지도교사 및 안전지킴이 활동 학생 운영, 후문 및 쪽문 폐쇄

마 마스터키(비상열쇠) 관리방침

- 마스터키의 관리책임은 행정실장에게 있으며 행정실 내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고 주간 및 평일에는 행정실에서 야간에는 당직기사가 관리토록 한다.

평상시	비상시 / 야간
행정실(장)	당직 기사(행정실 보관)

바 교내 차량통행 및 주차 관리 방침



- 교내 주차장소를 이용하고, 급식차량은 후문을 통해 출입하고 영양교사의 사전 연락을 취한 후 출입하며, 일반 업무차량은 정문을 통해 출입하며 이동경로를 통제 받도록 안내함.

사 보관구역(식료품, 유해(위험/화학)물질, 장비, 약품 등) 관리 방침

물질명	보관장소	보관책임	관리지침
화학물질	과학실	과학담당교사	각 보관구역의 물품은 보관책임 정교사가 관리, 운영하며 나이스 업무로 물품대장을 기록
용품, 장비, 설비	지하창고	행정실장	
보건실 약품	보건실	보건교사	
체육장비	운동장 보관창고	체육부장	
식료품	급식실	영양교사	

아 교무실과 각 교실 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현황

층별	책임 교무실	책임담당교사	전파내용
1층	행정실	행정실장	특별실 및 교내 상황전파 또는 경보발령
2층	교무센터	교무부장	자체 방송을 통해 전체 방송 실시
2층	진학부, 미래정보부	진학부, 미래교육부 부장	교실로 상황 전파
3층	학생안전부	학생안전부 부장	교실 및 2학년부 교무실로 상황 전파
3층	2학년부	2학년부 부장	교실로 상황 전파
4층	1학년부	1학년부 부장	교실로 상황 전파

자 비상탈출구, 2차탈출구(창문) 안전관리

- 에어매트 혹은 완강기 이용 없이 창문을 통한 비상탈출은 제한함.

차 방과 전·후 교실 운영 및 안전관리

-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할 경우 안전관리의 책임은 방과후 담당자 및 담당 수업 교사가 진다.
- 방과후 ~ 다음날 일과 시작 전까지 교실 안전관리는 당직자가 실시한다.

카 외부인에 대한 시설 개방 현황 및 안전관리

■ 학교시설 개방 현황

사용단체명	계약기간	사용시간	비고
			미정.

타 보건실 치료 데이터 관리 및 활용

- 보건일지 사용
- 기록방법 : 호흡기계, 소화기계, 순환기계, 정신신경계, 근골격계, 피부피하계, 비뇨생식기계, 구강치아계, 이비인후과계, 안과계, 감염병등으로 분류하여 병명에 맞게 기록함.

파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청구 관리 및 검토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청구관리 및 검토(학교폭력 치료)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7일 이내 담임교사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건 개요 접수 및 진료비 청구서

학교 및 유치원의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

- 1 사이트주소 : <http://www.schoolsafe.or.kr> 의 초기화면에서 학교별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2 사고통지 : 사고통지 클릭 → 사고 내용 입력 → 사고통지서 내부결재 후 보냄
- 3 공제급여 청구

가. 절차 : 공제급여 청구 클릭 → 해당 사고목록에 대한 청구서 작성

나. 청구서 공제회 첨부할 문서

- 공제급여청구서(청구자 서명 혹은 날인)
- 청구자 은행통장 사본
- 진단서(50만원 초과시)
- 치료 영수증 원본
- 진료비(비급여)세부내역(비급여 진료비 발행시)
- 주민등록 등본(50만원 초과시)

○ 학교폭력 피해치료비 청구서 제출서류

급여종류	공동서류	급여별 제출서류(각 1부)
심리상담 및 조언		1 학교폭력관련기관의 의뢰 확인서 2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일시보호	1 학교폭력피해치료비 등 청구서 2 청구인통장사본	1 자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2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1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2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 추후 학교폭력 사실 확인을 위해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우편접수 : 일반우편 발송시 본실무리가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방문접수 :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A

위험성 진단 결과 및 개선 방안

1. 2025학년도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위원회(7명) 구성

- 진단조직 방법 : 학교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조직한다. 위원회는 **7명 내.외로** 구성하되, 아래 영역별로 각 1명이 포함되도록 한다.

(가) 학교장 또는 학교안전책임관

(나) 행정실장

(다) 학생안전부장

(라) 체육교사

(마) 체험학습활동 담당교사

(바) 보건교사

(사) 특수학급교사

(아)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생회 임원

(자) 외부 관련 전문가 : 소방관, 경찰관, 구급대원, 지자체 관련 담당자, 학교안전사고 예방 전문가, 교육시설재난 전문가 등

학교안전책임관	교감
행정실장	

학생안전부 부장	.
체육교사	.
체험학습활동 담당교사	.
보건교사	.
특수학급교사	.
학생회 임원	.
관련 전문가	정왕소방서 소방관

2. 2024학년도 학교안전사고 발생 결과

○ 활동시간별

활동시간별								합계
체육수업	점심시간	수업시간	휴식/청소	학교행사	특별활동	등하교	방과후	
1	0	1	1	0	0	0	0	3

○ 활동장소별

장소별					합계
운동장/체육관	부속시설	교 실	통 로/복 도	교외활동	
1	0	1	1	0	3

○ 사고 형태별

형태별						합계
사람과의 충돌	물리적힘 노출	낙상-넘어짐	낙상-미끄러짐	낙상-떨어짐	기타	
2	0	0	0	0	1	3

○ 사고 행동별

행동별											합계
공부	실험/실습	구기운동	무도운동	육상	기타운동	식사/수면/휴식	보행/주행	장난/놀이	탑승/승선/자전거	기타	
0	1	1	0	0	0	0	0	1	0	0	3

3. 학교안전사고 위험성 통제 개선방안

- 체육활동과 보행 중 사고 발생으로 각 영역별 안전교육이 필요함.
- 적은 학생수로 인한 사고발생 수가 적지만 다양한 활동에서의 예방 교육이 필요함.

4. 2024년 학교안전계획 평가 결과 및 대책 반영

- 학교안전공제회 통보 사례가 매우 적지만 통보하지 않은 경한 사고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차년도 사고예방활동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음.
- 학교안전공제회 보고 사례가 적지만 작은 사고도 발생하였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홍보과 교육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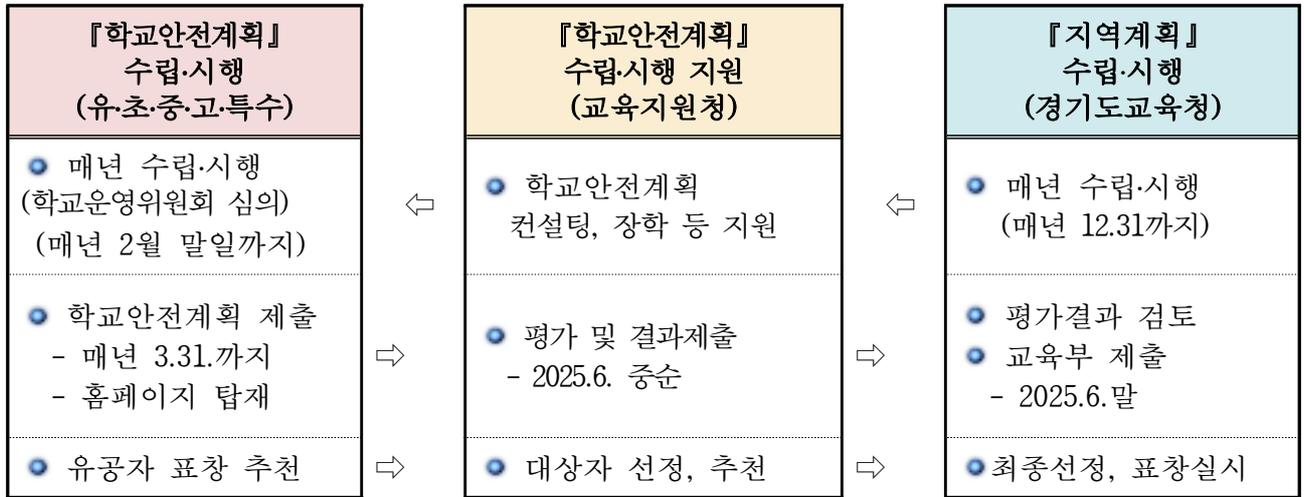
5. SWOT 분석

<p>【 강 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교통량이 많지 않음. 본관과 체육관, 운동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교육환경이 잘 구비되어 있음. - 주변 아파트단지 학생들만 거주하고 있어 교통 통제가 용이함. 	<p>【 약 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시화호가 존재하여 안전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주변 공사 현장이 많아 방과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높음.
<p>【 기 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리한 교통과 주변 신도시의 인프라 건설 및 공단지역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함. 	<p>【 위 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시의 건설 및 공단지역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의 위험에 노출됨.

6. 추진과제 및 전략수립 (중점 추진과제)

4대 분야	중점추진과제	담당부서
<p>①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NS등을 활용한 재난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2. 학교안전책임관 지정 : 교감(시설분야-교육행정실장 담당) 3. 학교안전계획 수립 : 3.31일까지 수립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안전협력 네트워크 구축 	<p>학생 안전부</p>
<p>②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 내실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 참여형의 안전교육 자료 개발 : 7대 안전교육 5분 안전교육 2. 생활속 안전위험 분야 예방 교육 강화 : 나침반 5분 교육 3. 각종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 수상안전, 체험학습 실험실습 등 4. 학생 참여 및 학교 맞춤형 재난 대응 훈련 : 연 2회 이상 	<p>학생 안전부</p>
<p>③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직원 안전 역량 강화 :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한 연수 과정 개설 2.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 : 교육 15시간 및 심폐소생술 의무이수 3. 학교안전 전문가 육성 : (가칭)학교안전관리사 자격신설(2016) 4. 안전한 교육 시설 : 교육시설 정기점검, 위험시설 보강 및 정밀관리 5. 교육환경비 우선 확보 : 위험시설 해소 6. 학생 참여형 안전점검의 날 운영 : 매월 4일 7. 학교 밖 안전 강화 : 체험학습, 진로체험, 통학로, 교통안전 8. 학교급식, 장애학생 안전 보호 강화 9. 안전사고 대비 : 매뉴얼 정비, 비상 배낭 비치, 비상장비 확충 등 10. 안전사고 예방 관리 심리적 치료체계 강화 : Wee 프로젝트 운영 11.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 강화 12. 황사 및 미세먼지 단계별 대처 강화 13. 학교안전 관련 조례·규칙의 발굴 및 정비: 학교운영위심의 	<p>학생 안전부</p>
<p>④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안전의식 고취 : 각종 행사시 안전분야 참여 2. 각종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 대책 계획 수립 3. 학교 안전 주간(1회) 운영 : 학기초,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안전디딤돌앱 	<p>학생 안전부</p>

□ 추진 체계 및 향후 주요일정



B 안전한 학교풍토의 조성

- 1) 국가 운영의 각종 재난대비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 매뉴얼을 숙지
:재난대응훈련, 민방위 훈련 적극 참여
- 2) 학교 시설에 관한 안전 관련 사고를 검증하고 이를 통한 예방교육 실천
- 3) 등·하교 안전 통학로 확보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
:정·후문 교통안전 지도
- 4) 교내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수시로 개선 노력
- 5)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통한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구성원	역할(임무)
학교장, 행정실장	▶ 전체 시설 세부 점검, 사각지대 점검
학생안전부	▶ 안전계획 수립 및 월별 안전점검 우수사례 수집 및 확산
담임교사	▶ 조·종례 및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교실 및 복도 안전점검
행정실장	▶ 점검결과 기록 유지 확인, 점검결과 확인 및 학교장 보고
시설·소방담당	▶ 점검결과 기록 및 행정실장 보고
담임 외 교사	▶ 교과교실 및 특별실 안전점검(과학실, 급식실, 체육관 등)
학생	▶ 교실 및 복도 안전점검

[2025년 “안전 점검의 날” 연간 계획]

일시	점검 내용	교육 내용
1월	■ 학교안전 체크리스트 점검 (1월 4일)	
2월	■ 학교안전 체크리스트 점검 (2월 4일)	
3월	■ 학교안전 체크리스트 점검 (3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침·반 안전교육 ■ 교통 안전
4월	■ 학교안전 체크리스트 점검 (4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침·반 안전교육 ■ 직업 안전 교육
5월	■ 학교안전 체크리스트 점검 (5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침·반 안전교육 ■ 교통 안전
6월	■ 학교안전 체크리스트 점검 (6월 4일)	■ 나·침·반 안전교육
7월	■ 학교안전 체크리스트 점검 (7월 4일)	■ 나·침·반 안전교육
8월	■ 학교안전 체크리스트 점검 (8월 4일)	
9월	■ 학교안전 체크리스트 점검 (9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침·반 안전교육 ■ 교통 안전
10월	■ 학교안전 체크리스트 점검 (10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침·반 안전교육 ■ 교통 안전
11월	■ 학교안전 체크리스트 점검 (11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침·반 안전교육 ■ 직업 안전 교육
12월	■ 학교안전 체크리스트 점검 (12월 4일)	■ 나·침·반 안전교육

6) 학교안전공제 스몰데이터 활용을 통한 안전사고 감소 방안 실천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운동장 학년별 요일제 사용을 통한 부상 방지

:학교 안전 지킴이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 7)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폭력에서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을 위한 교육 활동, 캠페인, 서약서 작성 활동
- 8) 나·침·반 안전교육 5분의 활성화 및 안전의식 확산
 - 주2회(수,금) 5분씩(주당 10분) 안전교육 실시 (담임교사)
 - 나침반 안전교육 교육 내용
 - : 교육방법 - 교육청 제공 자료를 재구성하여 활용
 - : 학급별 교육 내용(예시)

단계	교육내용
도입	나침반 안전송을 함께 부르며 교육 준비
전개	교육청 제공 나침반 안전교육자료 활용
정리	안전사고별 안전구호 함께 외치기, 대처법 토론해보기 등

- 9) 학생 참여형 활동 운영
 - 자율동아리(안전동아리) 예정, 학생안전도우미 10명 활동.

C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계획

7대 안전교육 계획

1) 목적

- 가) 연간 51시간(2025년-66.5차시)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중요함을 깨닫게 한다.
- 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론과 실제의 폭을 좁히고 대처능력을 키운다.
- 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위험요소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갖는다.

2) 방침

- 가) 과학, 기술가정, 체육, 도덕과 등 각 과목별 분야를 나누어 안전에 대해 폭넓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나) 사례 및 학생들 간의 토의를 통해 스스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해결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 다) 각 과에서 운영하되 과 특색에 맞게 운영한다.

3) 운영계획

가) 교과 및 창체 지도 계획

1) 교과별 안전교육 이수시간 합계

학년/학기	1/1	1/2	2/1	2/2	3/1	3/2
생활안전	4	6	8	2	4	6
교통안전	8	2	6	4	6	4
폭력 및 신변보호	5	5	6	4	10	0
약물 사이버 중독	6	4	6	4	6	4
직업안전교육	1	2	3	0	1	2
응급처치교육	1	1	0	2	2	0
재난안전 영역	2	4	0	6	4	2
합계	27	24	29	22	33	18
	51		51		51	

※ 각 교과 진도계획 참조

나)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영역별 교육목차

연번	교육일	교육시간	안전영역	교육내용	비고
1	3월 1주차	조례시간	생활	교내안전	3.5
2	3월 1주차	조례시간	교통	무단횡단	3.7
3	3월 2주차	조례시간	재난	황사, 미세먼지	3.12
4	3월 2주차	조례시간	보건	감염병	3.14
5	3월 3주차	조례시간	신변	언어폭력	3.19
6	3월 3주차	조례시간	중독예방	스마트폰	3.21
7	3월 4주차	조례시간	직업	안전불감증	3.26
8	3월 4주차	조례시간	교통	오토바이	3.28
9	4월 1주차	조례시간	재난	지진	4.2
10	4월 1주차	조례시간	보건	감기, 전염병	4.4

11	4월 2주차	조례시간	신변	사이버폭력	4.9
12	4월 2주차	조례시간	중독예방	카페인 중독	4.11
13	4월 3주차	조례시간	직업	직업안전	4.16
14	4월 3주차	조례시간	교통	안전벨트	4.18
15	4월 4주차	조례시간	생활	체육시간	4.23
16	4월 4주차	조례시간	재난	화재	4.25
17	5월 1주차	조례시간	보건	감염병	4.30
18	5월 1주차	조례시간	신변	성폭력	5.2
19	5월 2주차	조례시간	중독예방	흡연	5.7
20	5월 2주차	조례시간	직업	직업안전	5.9
21	5월 3주차	조례시간	보건	응급처치	5.14
22	5월 3주차	조례시간	생활	승강기	5.16
23	5월 4주차	조례시간	교통	자전거	5.21
24	5월 4주차	조례시간	재난	집중호우	5.23
25	5월 5주차	조례시간	신변	자살	5.28
26	5월 5주차	조례시간	중독예방	전자담배	5.30
27	6월 1주차	조례시간	직업	직업안전	6.4
28	6월 1주차	조례시간	재난	강풍	6.5(목)
29	6월 2주차	조례시간	교통	비오는 날	6.11
30	6월 2주차	조례시간	보건	출혈	6.13
31	6월 3주차	조례시간	신변	가정폭력	6.1
32	6월 3주차	조례시간	재난	지진해일, 쓰나미	6.20
33	6월 4주차	조례시간	생활	식품안전	6.25
34	6월 4주차	조례시간	신변	청소년 우울증	6.27
35	7월 2주차	조례시간	중독	온라인게임	7.9

36	7월 2주차	조례시간	중독	중독성 물질	7.11
37	9월 1주차	조례시간	생활	교내안전	9.3
38	9월 1주차	조례시간	재난	시설물안전	9.5
39	9월 2주차	조례시간	재난	감전사고	9.10
40	9월 2주차	조례시간	교통	횡단보도	9.12
41	9월 3주차	조례시간	보건	심폐소생술	9.17
42	9월 3주차	조례시간	신변	사이버학교폭력	9.19
43	9월 4주차	조례시간	직업	산업재해	9.24
44	9월 4주차	조례시간	생활	현장학습안전	9.26
45	10월 3주차	조례시간	재난	화재	10.15
46	10월 3주차	조례시간	교통	자전거	10.17
47	10월 4주차	조례시간	생활	스포츠안전	10.22
48	10월 4주차	조례시간	보건	무의식, 쇼크	10.24
49	10월 5주차	조례시간	신변	학교폭력	10.29
50	10월 5주차	조례시간	중독	스마트폰중독	10.31
51	11월 1주차	조례시간	직업	직업안전	11.5
52	11월 1주차	조례시간	생활	전동킥보드	11.7
53	11월 2주차	조례시간	재난	감염병	11.12
54	11월 2주차	조례시간	교통	선박안전	11.14
55	11월 3주차	조례시간	보건	자동제세동기	11.20(시험이후)
56	11월 3주차	조례시간	신변	안전송	11.21
57	11월 4주차	조례시간	중독	약물오남용(마약)	11.26
58	11월 4주차	조례시간	직업	청소년 산업재해	11.28
59	12월 1주차	조례시간	재난	지진	12.3
60	12월 1주차	조례시간	교통	보행안전	12.5
61	12월 3주차	조례시간	중독	흡연	12.17
62	12월 3주차	조례시간	재난	한파	12.19

	교육일	안전영역	교육내용	교육자료	링크	시간
1	3월1주차	생활	교내안전	안전한TV	https://www.youtube.com/watch?v=bU0SrIf2D-Q	4:05
2	3월1주차	교통	무단횡단,PM	교통안전공단	https://www.youtube.com/watch?v=1V_EhzsegRg	5:29
3	3월2주차	재난	황사,미세먼지	채널A	https://www.youtube.com/watch?v=EYnE3HPPxAq	4:36
4	3월2주차	보건	감염병	교육부	https://www.youtube.com/watch?v=lqyXkPAFSyI	4:00
5	3월3주차	신변	언어폭력	KBS교양	https://www.youtube.com/watch?v=eA1iImkQqNg	2:13
6	3월3주차	중독예방	스마트폰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https://www.youtube.com/watch?v=2wXS1Lwltro	2:51
7	3월4주차	직업	안전cf	안전보건공단안전월이	https://www.youtube.com/watch?v=bjqU0hyUT5s	0:30
8	3월4주차	교통	오토바이	행정안전부	https://www.youtube.com/watch?v=HvUpWWjR-hk	2:24
9	4월1주차	재난	지진	연합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WHbseAOCt2M	1:44
10	4월1주차	보건	감기,전염병	국민안전처 안전한TV	https://www.youtube.com/watch?v=gCcyPOpxqE	1:39
11	4월2주차	신변	사이버폭력	사이버안전국	https://www.youtube.com/watch?v=4ZJ-MBnI2kE	2:20
12	4월2주차	중독예방	카페인 중독	EBS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Mqy2-JnEA6Y	3:11

13	4월3주차	신변	학교폭력 cf		https://www.youtube.com/watch?v=7Xv5y_Kekyg	1:30
14	4월3주차	교통	안전벨트	KBS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iRK_BylYlfl	1:51
15	4월4주차	생활	체육시간	연합뉴스 TV	https://www.youtube.com/watch?v=8GwCv1SCxZk	0:43
16	4월4주차	재난	화재	YTN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UFVctSIVwas	4:43
17	5월1주차	보건	유행성이하선염	티캐스트	https://www.youtube.com/watch?v=kI0-N24uI08	1:35
18	5월1주차	신변	성폭력	이들목	https://www.youtube.com/watch?v=kCAg65tMd4Q	4:58
19	5월2주차	중독예방	흡연	서울특별시교육청	https://www.youtube.com/watch?v=ds_0m0TSRdY	3:56
20	5월2주차	직업	직업안전	안전보건공단안전월이	https://www.youtube.com/watch?v=uohfcYDo3Hw	3:50
21	5월3주차	보건	응급처치	YTN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XVUg06hLWiE	2:14
22	5월3주차	생활	승강기	YTN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02IQhUhe2Rk	2:20
23	5월4주차	교통	자전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https://www.youtube.com/watch?v=-SFIIPmkvh4	3:08
24	5월4주차	생활	식품안전	학교안전정보센터	https://www.youtube.com/watch?v=o_auE0-Rnvw	2:33
25	5월5주차	신변	자살	중앙자살예방센터	https://www.youtube.com/watch?v=rbeJDMQC6Rc	5:30

26	5월5주차	중독예방	담배	JTBC	https://www.youtube.com/watch?v=i_zlUqM_PUo	3:10
27	6월1주차	직업	직업안전	안전보건공단안전철이	https://www.youtube.com/watch?v=3RAi3YGonfo	6:37
28	6월1주차	재난	강풍	국민안전처 안전한TV	https://www.youtube.com/watch?v=ah8z3pyU7d8	4:20
29	6월2주차	교통	물놀이 안전교육	국민안전처 안전한TV	https://www.youtube.com/watch?v=Xi55FZG1oUM	7:30
30	6월2주차	보건	출혈	강원소방본부	https://www.youtube.com/watch?v=M_cznu43DD4	2:53
31	6월3주차	신변	가정폭력	YTN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shKmtaxgC5E	6:50
32	6월3주차	재난	지진해일, 쓰나미	대한적십자사	https://www.youtube.com/watch?v=Q-1HnyChmjY	1:27
33	6월4주차	재난	집중호우	충청북도	https://www.youtube.com/watch?v=hUuUASoBqTl	3:32
34	6월4주차	신변	청소년 우울증	학교안전정보센터	https://www.youtube.com/watch?v=-LJ-eCBSUek	5:40
35	7월2주차	중독	게임중독	학교안전정보센터	https://www.youtube.com/watch?v=6AR3E7B7tYc	3:35
36	7월2주차	중독	중독성 물질(마약)	학교안전정보센터	https://www.youtube.com/watch?v=J12gexBjc5o	1:20

나)-1 교과별 및 나침반 안전교육 이수시간 총합계

학년/학기		1/1	1/2	2/1	2/2	3/1	3/2
생활안전	교과	4	6	8	2	4	6
	나침반	2	1.6	2	1.6	2	1.6
교통안전	교과	8	2	6	4	6	4
	나침반	2.2	1.6	2.2	1.6	2.2	1.6
폭력 및 신변보호	교과	5	5	6	4	10	0
	나침반	2	1.6	2	1.6	2	1.6
	창체						
약물 사이버 중독	교과	6	4	6	4	6	4
	나침반	1.6	1.2	1.6	1.2	1.6	1.2
	창체						
직업안전교육	교과	1	2	3	0	1	2
	나침반	0	0.6	0	0.6	0	0.6
응급처치교육	교과	1	1	0	2	2	0
	나침반	2	1.6	2	1.6	2	1.6
재난안전 영역	교과	2	4	0	6	4	2
	나침반	2.2	1.6	2.2	1.6	2.2	1.6
합계		39	33.8	41	31.8	45	27.8
		72.8		72.8		72.8	

※학교(유치원 포함)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총 이수시간의 범위 내에서 안전영역별 이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20% 범위 내, 소수점은 올림처리)할 수 있다.

다) 학교 안전 주간(1회) 운영 - 추후 예정.

- 일시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기간 (1주일)
- 내용 : 안전교육 교사연수(3월). 합동소방훈련(예정), 안전디딤돌 앱 설치 캠페인, 교직원 안전교육 및 실습(7월~12월 중 실시 예정), 민방위 훈련(5월 예정) 등

라) 약물오남용예방 지도 계획

- 추후 보건교사 계획에 의함.)

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도 계획

가.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시기	장 소	교육 내 용	교육방법 (시간)	수업자
1학년	10월	각 반 교실 및 체육관	이론: 심폐소생술의 의미와 중요성, 방법	강의 (1시간)	보건교사
			실습: 마네킹 & AED 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실습 (2시간)	외부강사
2학년	9월	각 반 교실 및 체육관	이론: 심폐소생술의 의미와 중요성, 방법	강의 (1시간)	체육교사
			실습: 마네킹 & AED 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실습 (2시간)	외부강사
3학년	7월	건강활동 건강과 안전 (응급처치)	일상생활과 운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및 상해의 종류와 원인, 상해 발생 시의 구급 처치법과 대처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2시간	체육교사
	7월				
	8월	건강활동 건강과안전	일상생활과 운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및 상해의 종류와 원인, 상해 발생 시의 구급 처치법과 대처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1시간	

나. 교직원 교육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	교육일시	장 소	교육기관 또는 강사	방 법	비 고
교원, 일반직 계약직포함	2025 7월~12월 중	체육관	외부강사 or 보건교사	이론 및 실습교육 3시간	

♣ 교육내용

- 이론 - 심폐소생술이란?
 - 심폐소생술 방법 및 심실제동기 방법
 -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처치법
- 실습 : 모형 인형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바) 학생 성교육 지도 계획

- 추후 보건교사 계획에 의함.

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목차

I. 교내 안전

1. 실험·실습 안전
2. 체육활동

II. 교외 안전

1. 현장체험 학습
2. 물놀이 안전

I. 교내 안전

I - 1. 실험·실습 안전

가. 과학시간

화학약품, 위험물질 사용에 대한 취급방법과 안전수칙과 알콜램프 등 가열기구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숙지토록 한다.

1) 교사 안전조치

과학담당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실험용기, 시약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 둔다. 실험실습 전 충분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해 놓는다. 독성이 있거나 냄새가 좋지 않은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은 후드가있는 곳에서 하도록 하고, 후드가 없을 때는 창문을 열어놓는다.

2) 학생 안전수칙

<시약류 취급>

실험실 기기의 작업 및 조작은 지정된 순서를 정확히 따라서 하고, 취급할 약품의 사용법과 예방책을 교사가 설명할 때까지 약품에 손대지 않는다. 약품을 사용한 후에는 제자리에 보관하고 남은 것을 다시 시약병에 넣지 않는다. 다만 많은 양을 사용하는 아세톤, 에탄올,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용액, 과산화수소 용액 등은 회수하여 재사용 할 수 있다.

가연성 물질을 다룰 때는 화기를 주변에 놓지 않는다. 눈금이 새겨진 유리 기구(눈금 실린더, 뷰렛, 피펫 등)는 절대로 불로 가열해서는 안 된다. 시험관에 화학물질을 가열할 때는 마개를 열고 입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몸을 향하지 않도록 한다. 시약을 덜어낼 때는 시약의 이름을 확인한 후 깨끗한 용기에 필요한 양 만큼 덜어낸다.

지시가 없는 한, 약품의 맛을 보아서는 안 되고, 냄새를 알고자 할 때는 얼굴을 향하여 손으

로 부채질하면서 냄새를 맡아야 한다. 강산이나 강염기를 희석시킬 때는 반드시 물을 먼저 붓고 산이나 염기를 조금씩 부어가며 희석시킨다. 시약병을 실험실내에서 들고 다니지 않고 시약병이 비치된 실험대에 가서 적당량을 받아 써야 한다. 유독휘발성 액체시약은 스포이트로 옮긴다.

〈가열기구 실험〉

물질이 휘발성일 때는 마개를 단단히 하여 통풍이 잘되는 곳에 놓아둔다. 인화성이 큰 물질은 불 가까이에 두지 않는다.

알코올램프 안의 알코올의 양은 30~80% 정도로 담아 쓰고, 알코올램프 불을 기울여 알코올램프에 불을 붙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알코올 램프는 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고, 뚜껑을 옆에서 살며시 덮어 끈다. 잠시 후 뚜껑을 살짝 열었다가 다시 잘 덮는다.

나. 미술시간

미술시간 중 안전사고는 미술도구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1) 교사 안전조치

도구의 안전한 사용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지도하고 도구의 사용이 서툴거나 실수가 많은 학생을 파악하여 따로 지도한다.

2) 학생 안전수칙

조각칼은 칼이 지나가는 방향에는 몸이나 손을 놓지 않도록 하고, 커터 칼의 경우 너무 길게 빼서 사용하지 않고 손은 칼이 지나가는 부분에 놓지 않도록 하며, 사용 후에는 칼날을 넣는다.

글루건은 노즐이 손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달구어진 접착액은 온도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니퍼, 펜치, 가위는 물건이 물리는 부위에 실수로 손의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실습시간

가열 또는 전열기구, 칼 또는 날카로운 기구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1) 교사 안전조치

안전수칙을 충분히 지도하고 중요한 내용은 써서 보기 좋은 위치에 부착해 놓고, 준비된 식품재료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가스 불을 켜기 전에 가스가 새는지(냄새)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킨다. 칼날이 무뎠다면 힘을 주게 되어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적당하게 갈아졌는지 미리 확인한다.

2) 학생 안전수칙

<가열기구 다루기>

가스기구의 불을 켜는 순간 불이 붙었는지 확인하며, 가스기구 주위에는 인화물질을 가까이 놓지 않는다. 가스를 다 쓴 후에는 점화 스위치는 물론 중간밸브도 잠근다.

조리 시에는 국물이 넘쳐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지켜본다. 냄비를 가열 할 때, 냄비 뚜껑 및 손잡이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엌칼, 과일칼 다루기>

재료를 썰 때는 재료를 잡고 있는 손을 칼의 뒤쪽에 놓아 베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칼날은 아래쪽을 향하게 한다.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절대 칼을 들고 장난하지 않는다.

I - 2. 체육활동

체육시간

체육수업 전에 미리 파악하고 조치할 사항과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일을 숙지하여 지도한다.

1) 교사 안전조치

요양호자, 신체허약자, 심장질환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견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하여는 수업 전후에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충분히 한다. 정확한 운동방법과 주의사항을 완전히 숙지시킨 후 운동을 실시하고, 단계별, 수준별로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운동 중에는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 뿐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의 행동도 수시로 관찰한다. 경쟁이 과열되면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적절하게 통제한다.

2) 학생 안전수칙

체육시간에 몸이 아프면 미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쉬다. 개인 운동기구는 반드시 한 사람씩 이용토록 하고 체육기구 운반은 여러 학생들이 협동하여 조심스럽게 한다.

다른 친구들의 활동 모습과 내용을 열심히 보고 익히며, 경기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고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한다.

II. 교외안전

II-1. 현장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 안전지도 매뉴얼>

수학여행, 야외 체험학습, 자유학기제에 따른 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긴장이 이완되고, 교사의 입장 지도의 한계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학교 교내활동보다 증대되는 데에 문제가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 시에는 철저한 사전 위험 점검과 교육을 통해 학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주의사항

1) 계획 수립단계

관련 법규 및 교육부와 교육청 정책에 부합하도록 현장체험학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학생 안전관리 및 생활지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체험활동을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및 안전취약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학생안전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곳에서의 체험활동은 금지된다.

국의 여행 시 국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체험학습 불참하는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불참 학생 지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지도한다.

현장체험학습을 청소년수련시설에 위탁할 경우 학교안전법 제8조의2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이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을 실시하는지의 여부와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교육부 지침¹⁾에 의할 경우 수학여행·수련활동·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현장답사를 해야 한다. 계약 전과 체험학습 실시 전 2회의 현장답사를 실시하되 시기, 방법, 대상 등은 당해

계약 방식 및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학생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 학생 50명당 1인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중·소규모는 인력확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2) 수련 및 숙박시설

식재료 구매, 조리, 배식 과정에서 위생관리와 식수 제공 시 끓인 물, 생수 등 검증된 식수 제공여부를 확인한다.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식단이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생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한다.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함으로써 식중독 등 발생 시 역학조사의 증거자료로 활용토록

1)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2015. 2, 교육부)

한다.

숙박시설의 침대, 난간, 계단, 복도 등 시설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숙박시설의 베란다 및 창문을 넘나들 수 없게 조치했는지를 점검한다.

사전에 관할 시군구에 일정을 통보해 위생·안전 점검을 요청하고 인근에 유해환경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출발 전 안전사고 예방조치

출발 전 이동 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행렬에서 이탈해도 인솔자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마련한다.

출발 전 안전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 학생들이 주류나 화기물질을 반입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운송업체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 등에 운전자 음주 금지조항 및 보상 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치된 차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팩스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를 조회 요청하고, 해당학교 관할 경찰서로는 학생 수송버스 호송 협조(음주측정 등)를 공문으로 요청한다.

나. 현장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1) 교사

활동 전 과정에서 안전 및 생활지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인솔 및 지도교사는 수련관련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장비의 비치여부, 안전요원 배치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실시 전에 지참금지 물품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알리고, 지참하지 않도록 특별지도를 실시한다. 학생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기간 중 사전 계획에 따라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지도교사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인솔 및 지도교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사시간을 포함한 각종 교육활동에 반드시 참여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인솔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유사시 필요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고 이를 각 차량마다 부착한다. 인솔교사는 운전자와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통안전지도, 수상안전지도, 화재예방지도, 위험시설 및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지도, 질병

예방지도, 성폭행·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지도, 소지금지 물품 휴대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 대피토록 한다.

2) 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하며, 인솔 교사와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체험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인솔 교사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다중 이용 시설(숙소, 식당, 버스터미널, 지하철, 공항 등)에서는 공중도덕을 준수하고 교육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인솔지도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차량 운행 시에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탑승 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한다. 항공기 탑승 시에는 ‘기내반입 금지물품(문구용 칼, 가위, 폭발성 물질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II-2. 물놀이 안전

<물놀이 및 수상레포츠 안전>

물놀이 안전은 야외 놀이활동 중 가장 주의를 요하는 영역이다. 물놀이 중 안전사고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²⁾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지도가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물놀이 장소의 안전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고 물놀이 활동 중에는 물놀이 장소에 배치된 안전요원과 함께 학생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적정 수용인원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움직임이 감독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부적인 물놀이와 수상레포츠 안전수칙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안전매뉴얼을 참고할 것을 권장하고 여기서는 물놀이 안전 10대 수칙을 소개한다.

2) 피해학생(당시 초등학교 5학년)은 같은 학교 재학생 40명, 교사 2명 등과 함께 청소년단체 ○○○이 주관하는 하계 수련활동 참가 중 '09. 7.20(월) 15:30 ~ 15:50사이에 ○○콘도 야외수영장에서 지도교사와 안전요원이 입장 하에 물놀이 도중 익수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짐

<표8-82> 물놀이 안전 10대 수칙

- ① 수영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②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③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④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한다.
- ⑥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 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 ⑦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 ⑧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⑨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⑩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3 대비활동

가 2025년 훈련 계획

□ 훈련 총괄(8회) (안)

분 야	훈련 규모	횟수	시기	훈련 내용
재난 대비 훈련 (4회)	전국단위	4	9월,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화재 대피 훈련 · 을지태극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 훈련 · 전국단위 지역특성화 훈련 · 안전한국훈련 연계, 지진 대피 훈련
	시·군·구 단위	2	4월, 8월	▶ 지역특성화 재난 대비 훈련
주민 대피 훈련 (2회)	시·도 단위	2	6월, 10월	▶ 충무훈련 연계, 주민 대피 훈련 ※ 충무훈련 : 상반기(6월), 하반기(10월)

※ 차후 훈련계획 공문에 따라 실시 예정임.

□ 월별 계획(안)

월별	일자	훈련 분야	훈련 내용	비 고
추후 지정	추후 지정	화재 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화재 대피 훈련 - 다중이용시설·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중점 훈련 	전 국
추후 지정	추후 지정	복합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화 복합재난 대비 훈련 - 복합재난 발생 상황에 따른 지역 유관기관합동훈련 등 지역별 재난 대응역량 강화 훈련 	시·군·구
5월	추후 지정	민방공 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공 대피 훈련 - 적 공습에 따른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전 국
6월	추후 지정	주민 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단위 주민 대피 훈련 - 주민 대피 훈련 및 생활안전 교육 	

7월	추후 지정	복합재난	· 지역특성화 복합재난 대비 훈련 - 복합재난 발생 상황에 따른 지역 유관기관합동훈련 등 지역별 재난 대응역량 강화 훈련	시·군·구
9월	추후 지정	지역특성화	· 전국 특성화 훈련 - 지역·기관별로 취약 분야 맞춤형 훈련	<u>전 국</u>
10월	추후 지정	지진 대피	· 안전한국훈련 연계, 지진 대비 훈련 - 전 국민 대상 지진 대처 능력 강화 훈련	<u>전 국</u>
	추후 지정	주민 대피	· 시·도 단위 주민 대피 훈련 - 주민 대피 훈련 및 생활안전 교육	

※ 시·군·구 훈련은 15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일정은 다른 연계 훈련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차후 훈련계획 공문에 따라 실시 예정임.

나 재난대응 훈련 계획의 수립 배포와 실제훈련 (안)

일정	훈련명	훈련유형	대상	담당자
3월	재난대응계획 설명회	전체연수	모든 교직원	학생안전부장
3월	화재대피 훈련	전체연수	모든 교직원과 학생	학생안전부장
4월	재난 대비 훈련	전체연수	모든 교직원과 학생	학생안전부장
5월	합동 소방 훈련	전체연수	모든 교직원과 학생	학생안전부장
5월	지진 대피 훈련	전체연수	모든 교직원과 학생	학생안전부장
5월	민방공 대피 훈련	전체연수	모든 교직원과 학생	학생안전부장
8월	민방공 훈련	전체연수	모든 교직원과 학생	학생안전부장

9월	지진 대피 훈련	전체연수	모든 교직원과 학생	학생안전부장
10월	자체 소방 훈련	전체연수	모든 교직원과 학생	학생안전부장
10월	재난 대비 훈련	전체연수	모든 교직원과 학생	학생안전부장
11월	대설·한파 안전	전체연수	모든 교직원과 학생	학생안전부장
11월	민방공 훈련	전체연수	모든 교직원과 학생	학생안전부장
12월	위험성진단 결과 설명회	전체연수	모든 교직원	학생안전부장

※ 차후 훈련계획 공문에 따라 실시 예정임.

다 비상배낭의 마련과 관리

- 대피를 요하는 재난과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실에 비상배낭 상시 비치
 - 행정실장은 분기별로 내용물을 점검보완하고, 캐비닛 보관 등 보안관리 철저

< 비상배낭의 구성 >

- 학교와 주변 위성사진 및 지도, 건물 도면(배치도, 평면도 및 각종 설비도면 등), 학생과 교직원 명단, 비상 열쇠, 화재경보기 작동법, 스프링클러 작동법, 설비(전기/가스/수도) 밸브 잠금 방법, 안전사고 지휘체계 및 연락처, 사고 지휘본부/재난대응 및 지원기관 명단과 연락처, 학생 대피장소, 재난대응기술 보유 교직원 명단, 구급약품 배치 현황
- 비상용 손전등, 지압봉대, 기타 비상시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와 장비 등

라 단계별 재난 대응 매뉴얼



4

대응절차와 행동수칙

가

비상 커뮤니케이션

- 교육청 및 재난대응 관련 기관은 1. 학교 현황 참조
- 교직원 교내 연락망

교 장														
교 감														
수석교사														
교무센터 - 본관 2층					학생안전 - 본관 3층					특수교육 - 본관 1층				
1	교무기획부				1	학생안전부				1	특수교육부			
2	교육연구부				2	학생안전부				2	특수교육부			
3	교무기획부				3	학생안전부				3	특수교육부			
4	행정실무									4	특수교육부			
										5	특수교육부			
										6	특수교육부			
										7	특수교육부			
1학년 - 본관 4층					2학년 - 본관 3층					3학년 - 본관 2층				
1	1학년부				1	2학년부				1	3학년부			
2	1학년부				2	2학년부				2	미래정보부			
3	교육연구부				3	교무기획부				3	학생안전부			
4	미래정보부				4	교무기획부				4	3학년부			
5	교육연구부				5					5	미래정보부			
영양					보건					상담				
										사서				

1학년	담 임		부담임	2학년	담 임		부담임	3학년	담 임		부담임
	성 명	교과			성 명	교과			성 명	교과	
개별화 1반 (3571)	담임	부담임	개별화 2반 (3572)	담임	부담임	개별화 3반 (3573)	담임	부담임	개별화 4반 (3574)	담임	부담임
학교 주소		(15119)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남로 70									
대표번호											
학교안전공제회											

행정실(6) - 초등본관 1층									
1		실장		총괄	5		주무관		급여
2		과장		예산	6		주무관		시설
3		계장		지출	7		주무관		민원
4		주무관		지출	8		주무관		시설용역

- 학부모, 학생연락망은 담임교사를 통하여 운영
- SNS계정 활동을 통한 일괄 통보 운영(밴드 또는 학교 앱 활용)

나 장애학생 지원

□ 장애학생 안전보호 강화

-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 장애학생 현황 및 지원방안(현황)
 - 장애이해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특수교사, 담임교사)
- 장애학생 인권보호
 - 사회통합 및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특수교사)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특수교사, 담임교사, 안전지킴이)

다 대피 및 대피소 피난

재난 종류	대피 장소	기타
지진	운동장	
화생방	교실	교실 밀폐
화재	운동장	
민방위대피	호반써밋 주차장	
공습경보	호반써밋 주차장	

라 상황별 행동수칙

1) 무단(불법)침입/인질극

가. 목적

본 부속서는 운동장이나 학교 건물 내에서 불법침입자나 거동수상자를 발견하였다거나 인질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생/교직원의 생명과 학교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내에서 폭력을 휘두를 것으로 보이는 불법침입자나 거동수상자를 만나거나 보게 된 모든 교직원들은 자신들이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질극이 발생한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불법침입 또는 인질극 발생으로 인해 경찰을 불러야 하는 경우, 사건현장에 관한 법적 지휘권을 가진 경찰의 지시를 따르고 이들과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 책임

1) 모든 교직원들은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에 대한 트레이닝을 사전에 받아 놓아야 한다.

- 시간적으로 가능하다면, 학교장/학교사고지휘관/학교전담경찰관에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신고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른다.
- 만일 교직원이 무단침입자에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 다른 동료 교직원들과 동행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이들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무단침입자에게 점잖게 인사를 건네고 자신이 누구임을 밝힌다.
- 무단침입자에게 학교를 왜 방문했는지 묻는다.
- 무단침입자에게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비실(또는 행정실)에서 방문일지를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이들과 동행하여 경비실(또는 행동실)로 이동한다.
- 만일 무단침입자의 학교 방문 목적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들에게 학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한다.
- 무단침입자가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동행한다.

만일 무단침입자가 학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무단침입자가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학교에 계속 있게 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 만일 무단침입자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단 이들과 맞닥뜨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무단침입자들과 만난 당시의 상황(이들을 발견한 장소, 이들의 인상착의, 이들이 소지한 무기(흉기) 또는 (소지품)을 파악한다.
-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상황에서 무단침입자와 시각적 접촉을 유지한다.
- 학교사고지휘관/학교장 또는 경찰(112)에 학교에 무단침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무단침입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한다(되도록이면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무단침입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다)
- 학교장/학교사고지휘관은 교육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락다운을 발령한다거나 상황이나 경찰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실행한다.

2) 인질극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여 잡혀 있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인질(학생)의 안전이다. 교직원 등은 인질들이 학교 밖으로 끌려나가지 않도록 이들을 지켜야 한다. 모든 교직원들은 인질극이 벌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 만일 인질극을 벌이는 자가 당신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 끼어들지 않는다.
- 학교장/학교사고지휘관이나 학교보안관(이들에게 인질극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112 경찰신고)에게 인질극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린다.

학교 교직원 또는 학생들이 인질이 된 경우

- 인질범의 지시에 따른다.
- 인질이 된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한다. 학생들이 있는 경우 침착하게 행동하도록 한다.
- 가능한 한, 인질범들에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인질범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 인질범에게 말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고 말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이들과 언쟁을 벌인다거나 어떤 제안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학교장/학교사고지휘관

- 즉시 112에 신고한다. 인질범의 수와 인상착의, 인질극이 벌어진 정확한 장소, 학교가 취한 조치(락다운 또는 폭발물을 소지한 인질범에 의한 대피) 등과 같은 상세한 상황을 알려준다. 인질협상팀에게 자신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
- 락다운 또는 상황에 적합한 필요 조치를 실시한다.
- 학교 건물 바깥에 위치한 교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들을 학교 밖의 지정된 집합장소로 이동시키도록 지시한다.
-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를 격리시키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인질범에 대항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 교육장에게 인질극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가동시킨다.
- 인질범과의 협상을 위한 팀이 도착하는 경우, 이들에게 현장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다.
- 발생한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4) 교사와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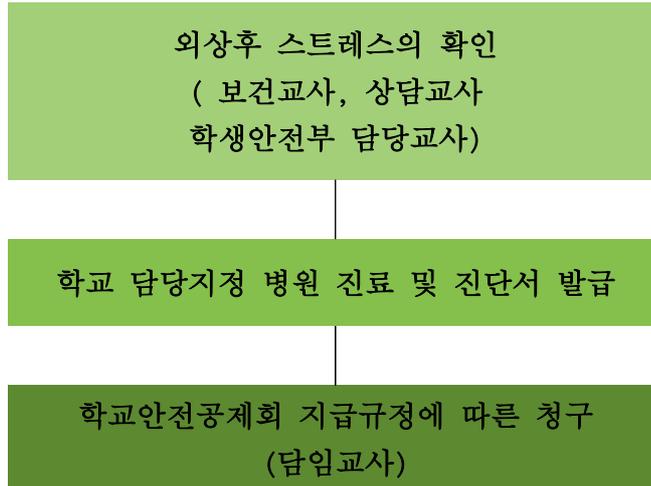
- 교직원은 락다운 또는 지시가 내려진 절차를 실행한다. 만일 학교 건물 밖에 있는 경우 학생들을 지정된 집합장소로 이동시킨 후, 지시를 기다린다.
- 모든 사람들은 경찰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신들이 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도록 한다.

(출처 : 「학교 현장 실전대비 훈련계획의 수립과 실행 가이드, 2016. 1, 교육부

5 복구활동

가 외상후 스트레스의 모니터링과 서비스

-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에 관한 흐름도 -



나 시설복구

(1) 풍수해(태풍·호우)

☐ 기상특보 발표기준

구 분		기 준
	태풍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17m이상의 폭우를 동반하는 현상
경 보	태풍주의보	태풍으로 인한 강풍, 풍랑, 호우가 예상될 때
	태풍경보	태풍으로 인한 강풍, 풍랑, 호우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될 때 (풍속이 17m/s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이상 예상될 때)
	집중호우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국지성)
경 보	호우주의보	6시간의 강우량이 70mm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경보	6시간의 강우량이 110mm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예 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단계	점검(교육) 내용	확 인
사전 점검	태풍이 내습하거나 장마가 오는 7월 전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교내 비상연락망과 관계기관과의 연락망을 점검·확인	
	태풍·호우로 인한 침수 등에 대비한 대피계획을 수립	
	지역 내 저지대(지하로) 및 상습침수구역의 위치 파악	
	태풍·집중호우 대비 학생 행동요령 숙지	
	학교 내 붕괴, 산사태, 침수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시설 점검	유리창에 금이 가거나 깨진 것은 교체	
	퇴실시에는 교실 및 복도 창문의 잠금상태 확인	
	천장마감재의 접합부 들뜬 부분을 보수	
	단전 및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조명기구를 구비	
	교사동 지붕 흡통 및 옥상 배수구의 낙엽 등 이물질을 제거	
	천막, 비닐, 로프, 모래주머니 등 방재용품을 점검하여 구매	
	태풍에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물품) 정리	
	교내 하수도 및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낙엽 등 이물질 제거	
	교내 수목 중 가지가 많은 것은 가지치기를 하고, 지주목을 정비	
	산사태에 대비하여 옹벽의 균열과 배수구를 정비	
노후되거나 기울어진 담장, 축대 등은 보수·보강		

□ 대 비

○ 발생상황 파악

- 기상청 등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통해 상황 파악
- 위성영상, 각종 수치자료 등을 바탕으로 태풍 진로 및 호우 진행 상황 주시

○ 상황 판단 회의

- 기상청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정보를 분석
-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및 재해대책본부 운영 여부 판단

○ 위기경보 발령 접수 및 전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의 위기경보 발령 접수
- 태풍, 호우 관련 위기경보를 지역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소속기관에 신속히 통보
- 위기경보 발령 수준에 따른 적절한 재난대비 조치 요청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체제 구축

-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재난발생시 소관 분야별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긴급지원 계획 수립
- 하천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붕괴위험 시설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 민·관·군 공동대응체제 구축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 및 현장 대응능력 제고
 - 경보발령,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진화, 수방, 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피해시설 응급 복구 및 방역과 방법, 질서유지
 - 긴급수송, 구조, 긴급급수, 구호품확보 지원
 - 이재민 수용시설 지원(학교시설)

○ 긴급대피체제 구축

- 태풍, 집중호우 등에 의한 침수, 붕괴 등 재난발생 예상시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
- 상습취약지역 학교파악 관리
 - 산사태위험지역, 상습침수지역, 붕괴위험지역, 해일위험지역 등
 - 학생 전화번호(집, 휴대폰, 부모직장)등 비상연락체제 유지, 신속전파
- 주민 및 학생 안전의식 고취 등 홍보 강화
 -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의 지속적인 홍보로 경각심 고취

□ 대응·복구

○ 단계별 비상근무체제 확립

- 1단계: 준비단계(주의보 발령시)

-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인적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
- 주요 조치 사항
 - * 호우, 태풍 등 재해 경보 파악 및 전파
 - * 태풍 발생 시 태풍의 진행 방향, 호우 발생 시 호우 상황 파악
 - * 비상연락망 점검 등 재난대책 근무태세 유지
 - * 인터넷 통신, 전화 및 팩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 재해대비완료가 어려운 지역은 가배수로, 안전표지판 등 설치
 - * 수방자재 확보 관리

- 2단계: 비상단계(경보 발령시)

- 풍수, 태풍 영향권내 해안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학생긴급대피 및 수용 조치
- 시·군청,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수방자재, 구호물자 현지 반출 등 지원 및 구호

○ 위험지역 주민·학생 대피 체제 확립

-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 기상특보, 재난 예·경보 등 신속 보도
-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소속 기관 비상근무 강화지시 및 대처상황 확인
- 방재 관련 유관기관과 홍보 협조 강화
- 주민·학생의 신속한 대피
 - 저지대 침수, 고립 예상지역, 산사태 예상지역, 붕괴위험 등 재난위험 지역 주민 및 학생 대피 조치 및 안전대책 강구
 - 학교수업(등교시간 조정, 조기 귀가, 휴업 등)실시 여부 검토 등 학생 보호대책 강구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 유관기관 조직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관할경찰서, 군부대, 보건소, 소방서
 - 피해상황 파악 : 사망, 부상, 실종 등 인명피해 및 학교시설피해
 - 구조·구급 활동, 응급조치 활동
 - 대책 마련 : 의료, 통신, 교통 두절시 소통 대책, 이재민 대피, 수용 및 구호 대책, 비상급수 및 생필품 공급 대책

○ 피해조사 보고

- 피해조사
 - 피해발생시 응급조치 후 시설직공무원 협조로 피해개요 및 피해액 및 복구액 산출

- 피해액 등을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보고

○ 복구 대책

-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대책 판단 : 응급복구, 기능복구, 개선복구
- 피해조사
 - 조사내용 : 피해원인 조사, 피해수량 및 복구계획,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작성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재해대장, 복구조서 검토
- 복구비용 지원 및 지원요청



복구 체크리스트

점검(교육) 내용	확인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태풍의 영향권 및 호우특보고 해제되었는지 확인	
학교 관리자는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 상황을 교육청 및 관계기관에 보고	
피해부분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	
지붕이 파손 되었을 때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응급 복구	
전기와 가스시설이 훼손되었으면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하여 복구	
파손된 조립식 건물은 추가 붕괴 위험이 있으니 출입 삼가	
기동, 보 등이 훼손되었을 경우 전문가의 안전점검 필수	
침수에 따른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물이 빠진 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교내 건물에 대한 소독 실시	



학생 행동요령

구 분	행 동 요 령
등교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매체(TV,라디오,인터넷)에서 기상 상황을 확인 • 등교 전 등·하교 시간조정 및 임시휴업 등에 대한 연락을 확인 • 우산, 우비, 장화 등 우천 대비 용품 사전준비 • 침수 등으로 인하여 등교가 어려울 경우 담임선생님께 통보
등·하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은 우회하여 등교 • 공사장, 하천, 배수로 주위는 위험하므로 접근 금지(익사위험)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는 접근 금지(감전위험) • 강풍에 날리는 간판 등 물건들을 조심
학교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풍에 대비하여 유리창, 출입문 잠금장치 확인 • 물이 새는 곳이나 파손된 곳을 발견하면 선생님이나 행정실에 알림 • 집중호우로 침수되거나 고립 시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

[2]**한파·설해****☐ 기상특보 발표기준**

단계	내 용	비 고
대설 주의보	24시간 새로 쌓인 눈이 5cm이상 예상될 때	눈을 밟으면 신발이 묻히는 상황
대설 경보	24시간 새로 쌓인 눈이 20cm이상 예상될 때 (산지는 30cm이상)	눈을 밟으면 신발이 완전히 빠지는 상황

☐ 예방**○ 제설도구 확보 및 사전점검·정비**

- 삽, 너가래, 빗자루 등 확보
-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 적정량 확보

○ 제설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 관리대책 추진

- 학교 등 진입로, 상습 결빙구간
- 급커브 및 급경사 구간

○ 학교 및 교사, 학생 홍보 강화

- 설해 발생 및 한파 시 학교 및 교사 조치사항, 학생 행동요령
- 적설량, 기온 등 기상상황 신속 전파
- 교통 통제 등 교통 정보사항
- 내 집, 내 학교 앞 눈은 내가 치우기
- 스마트 폰 앱 및 눈, 문자서비스 등을 활용 홍보

**체크리스트**

점 검 내 용	확 인
과거 폭설 피해가 있었던 학교는 유사건물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	
체육관, 경량철골조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눈이 흘러내릴 수 있게 충분한 지붕 경사도 확보	

재난방송을 통하여 대설 예보·경보를 청취	
학교 관리자는 폭설 대비 안전대책 수립	
대설 대비 학생 행동요령 교육	
학교 내 취약요인 점검을 위한 안전점검반 편성·운용	
학교 내 위험지역(붕괴, 눈사태 등)을 지정하고 표시	
학교입구, 출입구, 계단 등에 제설작업(염화칼슘, 모래 등 살포) 실시	
등·하교 시 위험상황(통학로 소실, 교통 두절 등)을 확인하고 대응조치	
연동형 온실은 폭설시 눈이 지붕골에 쌓여 피해가 가중되므로 쌓인 눈을 신속히 제거하고, 지지대 설치	
지지대로 사용할 버팀목, 널가래 등 방재용품 구비	
조립식, 경량철골조, 체육관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	
지붕 면적이 넓은 조립식패널 건물에는 중앙에 기둥 설치	

대비·대책

○ 풍수해 대책에 준하여 업무처리

- 피해상황을 파악한 후 교육청 및 유관기관에 보고
- 필요 시 등·하교 시간조정, 휴업 등의 학사행정 조치를 결정하고 전파
- 학생들의 교외 학습활동(현장학습, 체험활동 등) 검토·조정
- 등·하교 시 위험상황을 확인하여 알리고 대응 조치 실시

☐ 복구

체크리스트

점 검 내 용	확 인
학교 관리자는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기상특보가 해제되었는지 확인	
학교 관리자는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 상황을 교육청 및 관계기관에 보고	
교사동 옥상의 쌓인 눈은 얼기 전에 치워야 함	
붕괴된 건물은 학생들의 접근 금지	
복구공사는 눈을 제거한 후 실시	
구조적으로 파손된 곳은 교육청에 의뢰하여 점검	

☐ 학생 행동요령

구 분	행 동 요 령
등교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매체(TV, 라디오, 인터넷)에서 예상 적설량 확인 • 등·하교시간 조정과 임시휴업 등에 대한 연락 확인 • 모자, 장갑 등의 체온 유지 용품 준비 • 등교가 어려울 경우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 알림
등·하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음 • 횡단보도, 도로주변, 경사지에서는 차량 안전에 유의함 • 완전히 결빙되지 않은 하천이나 강, 저수지 등에 들어가지 않음
학교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 쌓인 지붕이나 고드름이 있는 곳은 접근하지 않음 • 눈 쌓인 경사면 주변과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않음 • 학교 현관 입구 또는 계단에서는 난간을 잡고 이동 • 감기나 동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젖은 옷과 신발은 완전히 말리고 착용

[3]**지진(지진해일)****☐ 기상특보 발표기준**

단계	내용	비 고
지진 해일	주의 보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 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진도기준(지진 4~5):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수준.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며, 약간의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짐
	경보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 파고 1.0 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진도기준(지진 5~6): 잘 설계된 구조물은 기울어지고 실제 구조물에는 큰 피해가 발생되며 부분적으로 붕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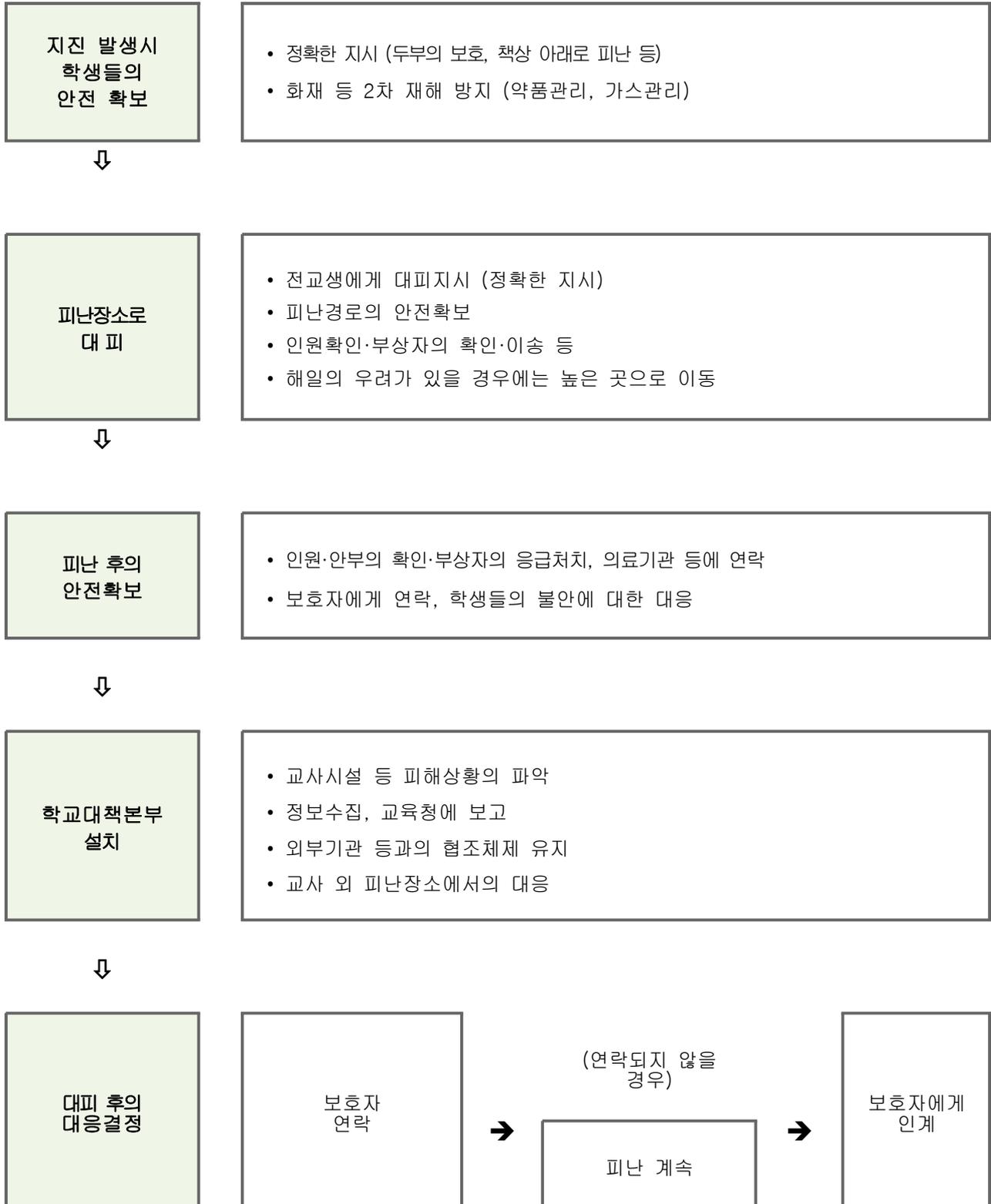
☐ 예방·대비**○ 사전준비**

- 학교 관리자는 지진에 대비한 사전 대비훈련을 실시
- 학교 관리자는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를 수시로 점검
- 교실별 피난로를 지정하고, 대피장소를 정하여 안내문을 설치
- 전기·가스·수도의 차단장치 위치와 조작방법을 숙지

○ 시설점검

- 교사동의 균열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동이 심하면 관계기관에 점검을 요청
- 건물의 기초와 건물주변의 지반 상태를 점검
- 옹벽, 담장의 균열이 있는지 점검
- 기와지붕 등의 파손 여부를 점검

□ 대응·대처



□ 복 구

○ 지진이 지나간 후 조치사항

- 학교 관리자는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지진 특보가 해제되었는지 확인
- 부상자를 발견하면 즉시 구조 요청
- 산중턱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산사태, 낙석에 주의
- 교내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가스 누출을 확인
- 상·하수도 와 전기 안전을 확인한 후 관계기관에 연락
- 추가 발생하는 여진에 대비

□ 학생 행동요령

구 분	내 용
등.하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 전 학교의 임시휴교 등의 비상연락을 확인 • 고층 건물 주위를 지나갈 때에는 낙하물로부터 책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 • 운동장에 있을 때에는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넓은 장소 가운데로 대피 • 지하도에 있을 경우 비상방송 및 직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 • 담장 옆을 지날 때에는 담장이 전도될 위험이 있으니 멀리 떨어짐

구 분	내 용
학교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내부에서 책상 밑으로 대피하고 머리를 수건 등으로 감싸 보호함 • 화재 발생시 침착하고 빠르게 소화해야 함 • 진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교사동 외로 나가지 말고 질서를 유지한 채 대기 • 교사의 지시와 교내 비상방송을 듣고 행동 • 해안가 근처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진동으로 인한 큰 흔들림을 느끼면 곧바로 지대가 높은 곳으로 피난

(4)**화재 및 폭발****☐ 예방·대비****○ 학교급별 예방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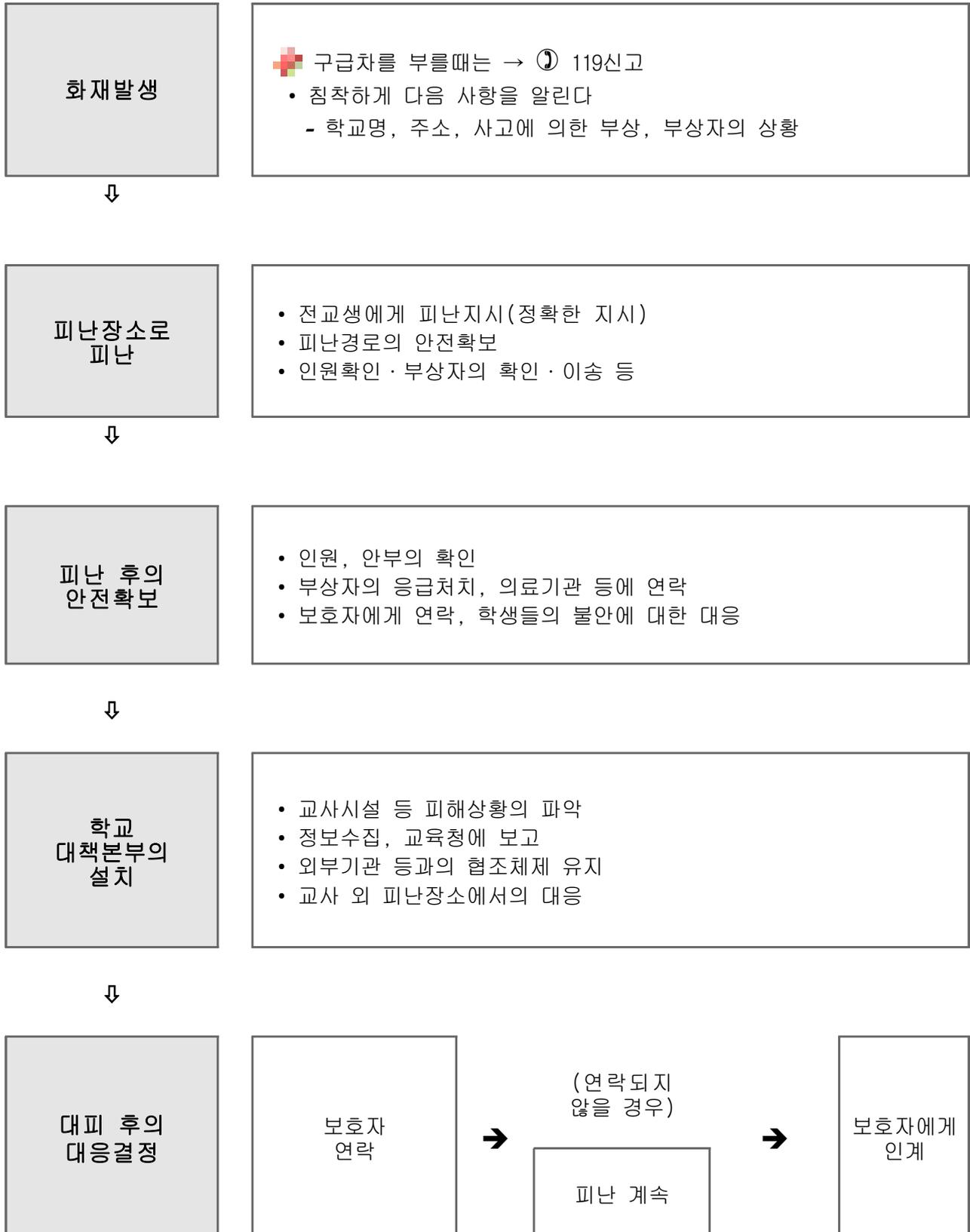
구 분	예 방 책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내 노후 전기제품교체 및 전기시설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화재는 대부분 교실의 전기제품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노후 배선과 멀티탭 등 교체 요망 • 학교시설책임자에 대한 소방안전의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흡연행위 절대금지로 담뱃불에 의한 화재발생 방지 - 쓰레기통 및 소각로 관리 철저 • 주방 및 급식실, 식당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강화

○ 전교생 대피훈련 실시

전교생 대피훈련은 화재 또는 지진발생시 다수의 학생들이 질서있고 신속한 행동으로 대피 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훈련임 특히 기숙사를 갖춘 학교는 정기적인 대피훈련이 요구됨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
 - 학년 초(3월)에 연속 2회 실시가 권장되며 이중 1회는 소방서로 요청하여 소방관 입회하에 실시
- 훈련주관 : 학교장(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안전지도교사)
- 훈련대상 : 전교생 + 전체 교직원
- 훈련내용 : 화재 및 지진대피훈련
 - 화재전파, 운동장대피, 초기소화, 119신고, 화재진압 등
 - 소방시설사용법 숙지(자탐,비상방송,소화기,옥내소화전,방화문 등)

□ 대응·대처



□ 복 구

○ 화재·폭발 후 조치사항

- 학교관리자는 화재 발생에 대하여 즉시 상부기관과 공제회에 보고함
- 화재가 발생한 곳에는 출입을 금지
- 학교 관리자는 피해 정도를 판단하여 수업대책을 수립
-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부기관과 함께 사고대책반을 설치
- 건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가의 진단을 받음
- 화재 발생 직후부터 피해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사진을 촬영
- 행정실에서는 소방훈련, 소방점검, 전기안전점검 등의 서류를 준비
- 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복구공사를 진행

(5)**폭염** **기상특보 발표기준**

구 분		내 용
폭염		통상 30℃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
경 보	폭염주의보	6~9월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6~9월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방**○ 중학교**

- 폭염발생 대비 피해예방을 위한 학생 행동요령 숙지 교육 및 단위 학교별로 학부모 대상 홍보
- 폭염 발생원인, 피해예방 등에 관한 계기교육 실시
- 휴업 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수립
- 학교급식 관련 위생관리 사전 점검
- 시·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결정

○ 교직원

- 학생 비상연락망 파악, 교실 창문 밀폐 여부 점검 등 안전조치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발송 및 학생 보건 교육

 대응·대책**○ 중학교**

-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재량으로 결정된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신속히 통보
- 실외·야외 학습은 실내 학습활동으로 대체
- 폭염 예방교육 철저
- 창이 넓은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 하고 꼭 물병 휴대 등
- 학교급식 위생 철저
- 학생 외출 자제 등 학부모에 대한 홍보
-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 등에 대한 자율학습 지도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휴업, 단축 수업 조치 등 결정사항을 신속히 학교에 통보
- 학생 건강 피해 상황, 수업진행 상황 등 현황보고
- 기상상황에 따라 학교 정상수업 진행 여부 결정·통보

□ 복 구

○ 학교

- 학생건강 등 현황 파악 및 사후 조치
- 현기증, 탈수, 열사병, 두통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학교 시설 점검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폭염 피해상황 점검 및 사후 조치

□ 학생 행동요령

구 분	행 동 요 령
등.하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 전 학교의 임시휴교 등의 비상연락을 확인 • 되도록 천천히 걸음 • 가볍고 얇은 옷을 착용하고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을 가림 •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
학교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함 •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의 체육활동 등 실외·야외 활동을 자제함 • 지정된 음용수를 규칙적으로 자주 마심 •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함
이상증세 발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 관련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선생님께 알려 응급조치를 받음 • 폭염환자(쓰러진 학생)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에 연락하고 선생님께 알림 -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긴후 환자의 몸을 식혀줌 - 응답이 명료하고 의식이 뚜렷한 경우 수분이나 염분을 섭취하게 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 수분섭취를 금지

☐ 기상특보 발표기준

구 분		내 용
황사		바람에 의해 불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또는 그 모래흙을 의미
경 보	황사주의보	1시간 평균 농도가 $400\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시
	황사경보	1시간 평균 농도가 $800\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시

☐ 예 방**○ 중학교**

- 황사발생 대비 피해예방을 위한 학생 행동요령 숙지 교육 및 단위 학교별로 학부모 대상 홍보
- 황사 발생원인, 피해예방 등에 관한 계기교육 실시
- 휴업 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수립
- 학교급식 관련 위생관리 사전 점검
- 시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결정

○ 교직원

- 학생 비상연락망 파악, 교실 창문 밀폐 여부 점검 등 안전조치
- 황사피해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발송 및 학생 보건 교육

☐ 대응·대처**○ 중학교**

-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재량으로 결정된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신속히 통보
- 실외야외 학습은 실내 학습활동으로 대체
- 보건위생교육 철저 : 마스크 착용 및 외출 시 귀가 후 얼굴, 손씻기 지도 등
- 학교급식 위생 철저
- 학생 외출 자제 등 학부모에 대한 홍보
-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 등에 대한 자율학습 지도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휴업, 단축 수업 조치 등 결정사항을 신속히 학교에 통보
- 학생 건강 피해 상황, 수업진행 상황 등 현황보고
- 기상상황에 따라 학교 정상수업 진행 여부 결정·통보

□ 복 구

○ 학교

- 학생건강 등 현황 파악 및 사후 조치
-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를 통한 먼지 제거
- 필요시 교직원 및 학생 건강진단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황사 피해상황 점검 및 사후 조치

□ 학생 행동요령

구 분	내 용
등·하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 전 학교의 임시휴교 등의 비상연락을 확인 • 일기예보 확인하고, 먼 하늘을 보고 보통때와 다른 점 확인 • 손수건이나 휴지, 입 가리개 등을 준비 • 황사가 질을 경우 교차로, 횡단보도, 독길 등을 걸을 때 안전에 유의
학교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문을 닫고 바깥 활동을 줄임 • 손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하여 황사 질환을 예방 • 눈이 가렵다고 손으로 만지지 말고 물로 씻거나 점안제를 사용 • 물을 자주 마심
이상증세 발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에서 황사 증상을 느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신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천천히 깊게 호흡함 - 창문을 닫고 물수건을 널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함 - 양치질을 하고 깨끗한 물이나 가글로 목구멍을 헹굼 • 코에서 황사 증상을 느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를 엇박자로 눌러 콧물을 빼냄 - 콧구멍을 한쪽씩 막고 번갈아 품 - 깨끗한 물로 콧속을 세척 • 눈에서 황사 증상을 느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을 비비지 말고 눈물이 흐르게 함

(7)**방사능 방재****개 념**

○ 방사능과 방사선의 개념 구분

구 분		내 용
방사능		방사선 물질이 시간당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함
방사선	개 념	방사선 물질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물질을 투과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광선과 같은 것
	자연방사선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으로부터 받는 방사선을 말함
	인공방사선	인위적인 행위 또는 결과로 발생하는 방사선을 말함 (예 : 엑스레이 촬영시)

대비·대응

○ 학교 방사능위원회 설치(비상대책반)

- 방사선비상을 대비한 대피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 방사선비상시 발족되는 상황실 조직 구성 등 방사능방재체계의 정비
- 방사선 비상 발생시 학교내의 연락체계 수립과 피난·실내 대피 지도 등 교직원의 역할 분담

○ 대피훈련 실시

- 대피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학생이 체험을 통해 방사선비상 발생시 행동요령 습득
- 재난경보 및 비상발령 기준, 대피 절차 및 행동 요령 숙지, 방호복과 방호약품 사용법 숙지

학생 행동요령

단 계	장 소	행 동 요 령
청색비상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내로 국한되는 경우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보방송이나 홍보차량 등의 방송을 잘 듣고 지시에 따름 • 신속히 실내로 대피 • 교실 입실 후 창문을 닫고 에어컨 및 환풍기 등을 정지시킨 후 실내에서 대기 • 방호복 및 방독면 착용요령 숙지 •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방법 및 시기를 숙지
	하교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으로 귀가하여 손, 발을 씻음
적색비상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밖으로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에서 창문을 닫고 대기하며, 방송을 청취함 • 야외에 있으면, 교사의 지시로 신속하게 실내로 피신, 대피(소개)준비 •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방법에 따라 복용 • 방호복 및 방독면 착용 • 노출된 음료수 및 음식을 섭취하지 않음 • 대피계획에 의거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함
	하교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지자체의 지정된 대피집결지로 대피함 • 대피소에 도착하면 교사나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담당자의 지시에 따름

[8]

학교 급식 및 식중독

○ 학교 급식 안전 매뉴얼 및 급식실 운영계획 참조

구분	관 심(Blue)	주 의(Yellow)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지수 : 10~34 •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높은 기후의 변화 •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이 잦은 봄가을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지수 : 35~50 • 해안지방 어패류에서 비브리오균 검출 보도 • 일부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사고 발생 • 일부학교에서 복통 및 설사환자 발생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정보수집 및 전파(교육부/교육청) ▶ 급식관리 철저,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협조체계 가동(교육부/교육청) ▶ 복통·설사환자 모니터링 강화(학교)
구분	경 계(Orange)	심 각(Red)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지수 : 51~85 • 집단급식소에서 산발적 식중독 발생 • 일부지역에서 복통·설사환자 100명이상 발생 • 10개 학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지수 : 85이상 • 집단급식소에서 100명이상 식중독 발생 • 단위학교 학생의 30%이상 설사환자 발생 • 30개 학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사고 대책본부 운영(교육부/교육청) ▶ 체험학습 억제, 급식중단, 대책반 운영(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사고 대책본부 비상근무(교육부/교육청) ▶ 급식 및 체험학습 중단, 대책반 비상근무(학교)

[9]

화학물질 유출사고

정의

-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 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

특징

- ▶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유형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문 대응기관의 참여 필요
- ▶ 인명, 환경 및 재산피해 확대

원인

- ▶ 작업자 부주의, 시설관리 미흡, 운송차량 사고로 대분류
- ▶ 세부원인 분류
 - ① 작업자 부주의 - 관리부실, 유지·보수부실, 제조부실, 설치오류, 교육·훈련 미흡 등
 - ② 시설관리 미흡 - 부식·균열, 용기(탱크)파손, 제어장치(설비) 오작동, 전기누전, 과잉 반응 등
 - ③ 운송차량 사고 - 관리소홀, 운전미숙, 졸음 및 음주운전 등

유형

- ▶ 유해화학물질 제조·보관시설의 화재·폭발
- ▶ 저장용기나 저장탱크의 배관, 밸브 파손 등으로 인한 유출
- ▶ 육상 운송차량(탱크로리 등)의 전복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유출

단계별 조치 절차

▶1단계 예방활동

- 학교에 보유한 화학물질의 종류, 보관장소, 공급업체, 비상연락처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
- 보관 중인 화학물질에 대해 월 2회 이상 상태를 점검·기록
- 교내·외에 화학물질 위험상황 발생 시 경보전달 체계 마련
- 오염 제거를 위한 장비와 개인보호장구의 보관장소 및 수량 관리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비상대피로, 대피 장소 및 비상사태 발생 시의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학생 비상대피계획 수립 포함)

▶2단계 누출사고 발생시

- 119와 112에 전화를 걸어 사고 발생을 통보
- 교내·외 신속하게 경보를 전파한 후,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교실 입실 또는 대피를 유도
- 외부 공기와 통하는 설비(에어컨 등)의 작동 차단
- 차량을 이용하여 대피 할 경우 교육청 및 지자체의 지원차량 이동 경로와 시간 확인
- TV, 라디오를 확인하고, 재난대응기관(소방서, 지자체)과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파악
- 학생 비상대피계획 점검·확인

▶3단계 학생 대피

- 학생 대피 인원을 확인·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 학생 비상대피계획에 따라 대피 지시
- 대피 후 학생 인원 파악하고, 학교에서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후 학생 인계조치
- 인원 및 시설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

□ 학생 행동 요령

▶학교에서

- TV, 라디오 등 방송을 청취하며 학교 안내에 따른다.
- 운동장 등 밖에 있을 경우 신속히 교실로 들어간다.
-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 통하는 설비(에어컨 등)의 작동을 차단한다.
- 대피를 위해 우의 또는 비닐과 수건, 마스크 등을 준비한다.

▶가정에서

- TV, 라디오 등 방송을 청취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안내에 따른다.
- 가능한 외부와 연결된 모든 출입문을 닫고, 창문과 출입문을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 등으로 밀봉한다.
(외부 공기와 통하는 설비(에어컨 등)의 작동을 차단)
- 집 밖에 있다 들어온 경우 비눗물로 샤워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입고 있던 옷 등은 비닐봉투에 담아 폐기처리)

▶야외에서

- 방독면이 있으면 착용하고 방독면이 없다면 수건,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가능한 우의나 비닐로 피부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대부분의 독성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대피하며, 관계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움직인다.
- 대피 할 경우 바람을 안고(바람을 마주보고) 대피
- 만약 사고 발생지역에서 자신의 위치 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풍향의 직각 방향으로 대피한다.
- 실내로 대피하는 경우 창문 등을 닫고 외부공기와 통하는 설비(에어컨 등)의 작동을 차단한다.

□ 노출물 특성에 따른 대처

- ▶강한 산이 피부나 의복에 묻었을 경우 : 많은 양의 물로 충분히 씻고 산이 묻은 부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 후 다시 물로 씻음
- ▶강한 알칼리가 피부나 의복에 묻었을 경우 : 많은 양의 물로 충분히 씻고 염기가 묻은 부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 후 다시 물로 씻음
 - 피부: 묽은(0.1M/L) 암모니아수 또는 묽은(1%)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으로 중화
 - 눈 또는 입: 0.1%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으로 씻음
 - 의복: 0.1M/L 암모니아수로 중화
 - 피부: 0.1% 아세트산 수용액으로 중화
 - 눈 또는 입: 2% 붕산수로 닦음

○의복: 0.1% 아세트산 수용액으로 중화

▶유독가스 또는, 휘발성 액체의 가스를 마셨을 경우 : 염소가스, 이산화황, 암모니아, 클로로포름, 에테르 등의 유독가스 혹은 휘발성 액체의 증기를 마셨을 경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 눕히고 체온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온하고 안정시킴

□ 정의

- 학교 내에서 무기 또는,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여 직접 공격

□ 유형

- ▶ 테러리스트들이 학교를 무력 점거하여 학생들을 인질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 적대국에 대한 보복을 위해 학생들에 대한 살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 학생 행동 요령**▶ 학교에서**

- 학교 내에 총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바닥에 엎드린다.
- 총격 소리가 들린 반대 방향으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을 찾아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소리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이동한다.
- 112, 119 신고 시 안전 확보에 가장 유의하며 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신고한다.
-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몸을 가릴 수 있는 기둥이나 방어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 학생이 인질이 되었을 때는 테러범의 지시에 따르고 자극하지 않는다.
- 출동한 경찰 등의 현장통제에 따른다.

▶ 교외에서

- 학교 밖에서 총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바닥에 엎드린다.
-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을 찾아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이동한다.
(몸을 최대한 가릴 수 있는 기둥이나 방어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
- 112, 119 신고 시 안전 확보에 가장 유의하며 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신고한다.
- 안전한 장소 대피 후 상황이 종료 될 때까지 주의를 살핀다.
- 학생이 인질이 되었을 때는 테러범의 지시에 따르고 자극하지 않는다.
- 출동한 경찰 등의 현장통제에 따른다.

1 응급처치의 정의

○ 응급처치의 개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한 후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기타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 응급처치의 중요성

구조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삶과 죽음, 회복기간, 장애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 ① 처치자 자신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 ② 응급 상황일 때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한다.
- ③ 함부로 물이나 음식물, 약을 먹이지 않는다.
- ④ 환자에 대한 생사의 판정을 하지 않는다.
- ⑤ 환자의 몸에서 나온 구토물이나 혈액 등이 자신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⑥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되, 이로 인해 2차 손상이 우려될 경우에는 옮기지 않는다.
- ⑦ 어디까지나 응급처치로 그치고 전문 의료인의 처치에 맡긴다.

3 응급환자의 개념 및 응급증상

○ 응급환자의 개념

질병, 부상,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

구분	응급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계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두부 손상	의식장애,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심혈관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계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대퇴부 척추의 골절, 혈관손상, 다발성외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화상, 급성복통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혈관손상 등
안과계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안통, 눈 출혈 등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피부에 나타난 이상 반응
정신과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소아과계	소아 경련성 장애	소아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이물질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질이 들어가 제거가 필요한 경우

4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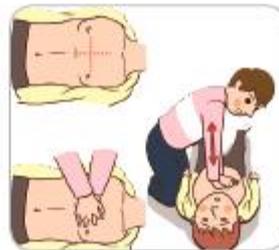
구분	학생 행동 요령
응급상황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 환자의 전반적인 모습, 행동, 주변 환경을 보고 판단
상태 파악 및 도움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환자의 상태를 판단 ○ 환자의 상태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119에 전화를 걸어 문의 ○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생각되면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요청
119 도움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상황 시 당황하지 않기 ○ 구급차를 불러야 할 시점을 놓치지 않음 ○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일반 차량으로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경우 2차 부상 등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
안전한 환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요원이 현장에 오기 전에는 가급적 환자를 옮기지 않음 ○ 현장이 위험하면 이차적인 손상에 주의하면서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김
응급처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취할 경우 효과가 가장 큼



1 반응 및 호흡 확인



2 도움 및 119신고 요청



3 가슴압박 30회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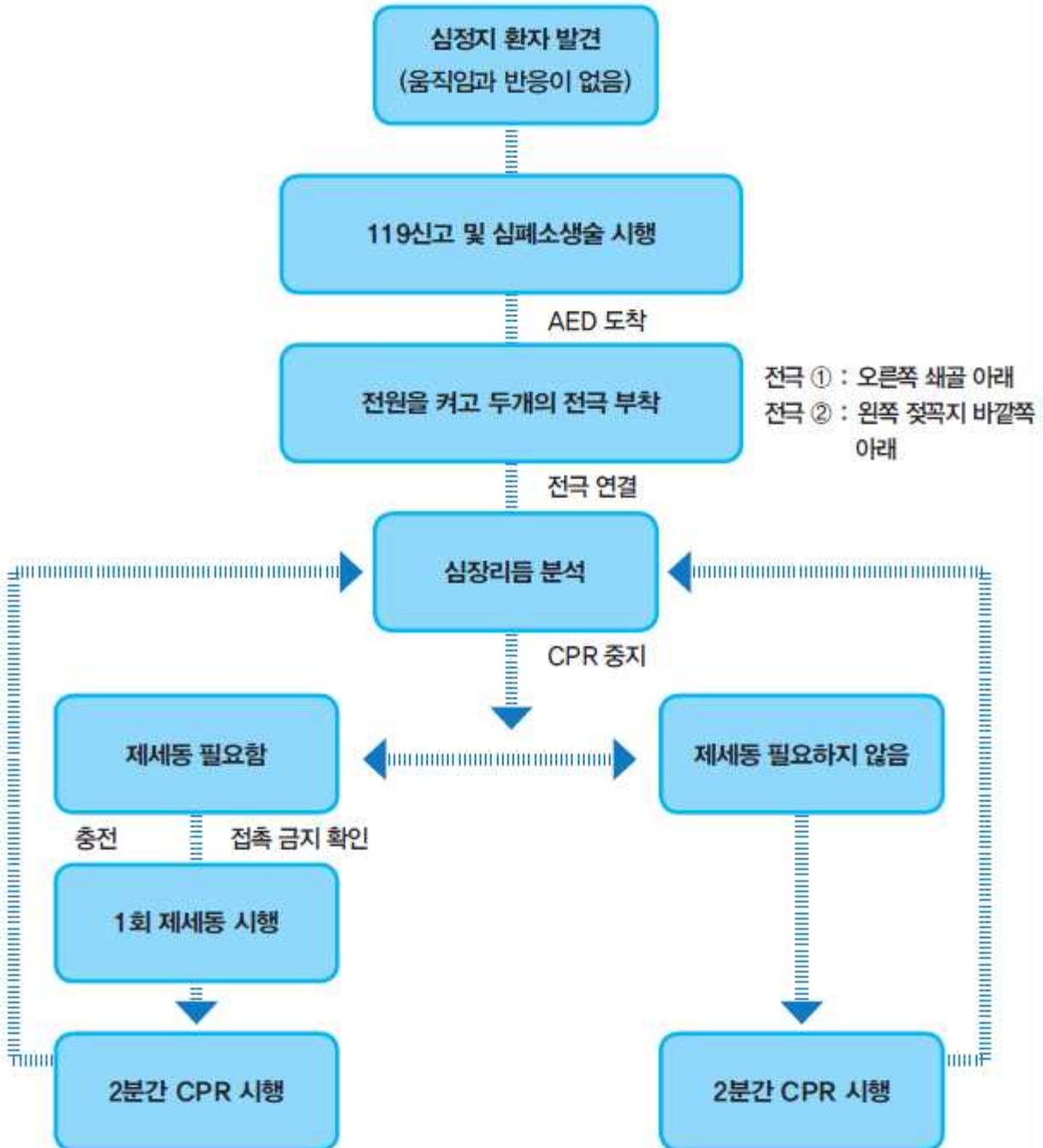
4 인공호흡 2회 실행

!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방법

구분	학생 행동 요령
상황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소실 등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
구급차 도착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상태 파악을 위해 119 상황센터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급차 도착 전까지 전화를 통해 응급처치 요령을 지도 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응급처치 실시 ▶ 의식, 호흡, 맥박 등을 확인하여 의식이 없으면 기본소생술을 먼저 시행해야 하고, 의식이 있다면 상황별 응급처치를 시행
전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착하고 명확하게 사고가 난 장소, 주요 건물, 사건이나 어떤 종류의 사고 인지를 말해야 하며, 휴대전화의 경우 위치정보 동의서비스를 활용 ○ 환자의 상태와 부상자 수, 심폐소생술 실시 여부 등을 통보
신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대가 출동 후 관련 정보를 다시 물을 수도 있으므로 신고 후 전화를 사용 하지 않음 ○ 먼저 전화를 끊지 않음
응급상황 행동원칙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상황인지의 확인 및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판단-구조요청(119) ○ 안전한 장소로 환자 이동(척추손상 예외)-환자 응급처치 실시

5 참고사항

! 심폐소생술 순서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① 전원을 켜다



② 두 개의 패드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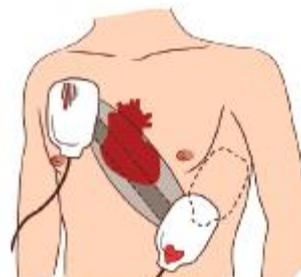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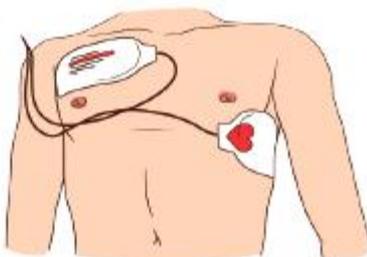
③ 심장리듬 분석



④ 제세동 시행



⑤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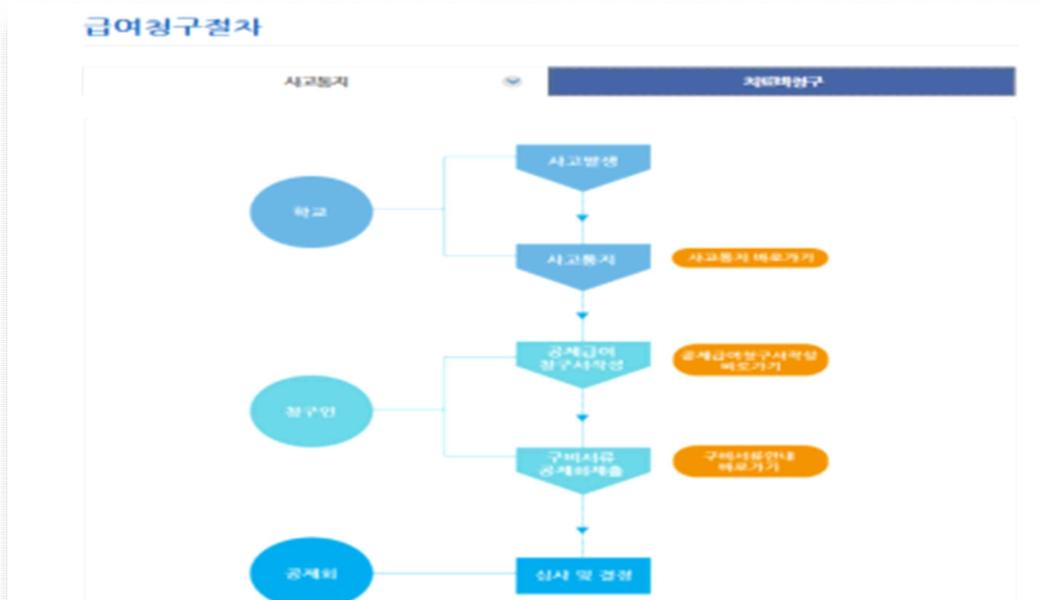


패드 부착 위치

다

피해보상의 청구

- 학교안전공제회(<http://www.ggssia.or.kr>)피해보상 청구 관련 규정과 절차
- 사고 발생시 담임교사 발생사안 접수처리(7일 이내)



끝.